

I.반론보도청구사례

<나는야, 통일 1세대> 저자인 신청인이 어린이들의 글을
왜곡시켜 저자의 의도대로 이용했다는 사실적 주장이
공표되어 피해를 입었으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1997. 11. 28.자 판결 (97카기6915)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997년 11월 28일 한국의국어대 이
교수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는 <월간조선>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월간조선> 1997년 9월호에 [“어? 왜 빠졌지요? 그럼 공산주의가 좋은 나
라인가요”] 라는 제하의 기사에 신청인이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책을 펴내면서 어린
이들의 글을 일부 왜곡시킨 채 저자의 의도대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고, 이어 일간 조선일보 1997년 8월 29일자 제3면에 [나는야, 통일 1세대] 라는 제
하의 사설에서 어린이들의 통일에 관한 글이 누구에 의해선지 찔리는 등 변형된 사실이
드러난 이 시점에서 먼저 이 교수는 이 건에 대해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간조선>에 대한 신청에 대해 “사실적 주장이 공표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반
론보도게재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간 조선일보 사설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는 “사설내용
이 일부 사실적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궁극적으로 신청인에 대
하여 특정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조선일보 편집진의 “의견”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
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1997년 9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신청(97서울중재240, 241, 242)을 냈
으나 불성립결정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7카기6915 반론보도

신청인 : 이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김기중, 김성남, 김일수, 김철준, 박연철, 박원순, 박인제, 박주현,
안상운, 이상경, 이석연, 이석형, 장주영, 조용환, 한승헌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상훈, 방우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주석영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조선>의 차례란에 [‘나는야, 통일1세대’ 관련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26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제90면 우측 상단부분에 [‘나는야, 통일1세대’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26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그밖의 여백에는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문 본문을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이름을 16급 고딕체 활자로 각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판결 송달 후 최초로 <월간조선>을 발행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월 금 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조선>의 표지란 중 우측상단 부분 및 차례란 중 우측상단 부분에 각 별지 제1 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대제목 부분은 특호 고딕체 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2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고, 본문 제90면 이하의 기사란 중 우측상단 부분 지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대제목 부분은 특호 고딕체 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22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소제목 부분은 20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의 이름은 2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하고,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간 조선일보 제3면 사설란의 상단부분에 별지 제3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특호 고딕체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이름은 2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하며, (3) 만약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각 위 기간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1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지인 <월간조선> 1997년 9월호는 제90면 이하에서 [어? 왜 빠졌지요? 그럼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인가요? 추적 통일원의 통일캠페인 참고도서에 글을 쓴 두 어린이가 말하는 왜곡·변형의 사례] 라는 제목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하였다.

가. 제90면에서 “통일원에서 캠페인 광고 제작 참고도서로 광고회사에 제공한 ‘어린이를 위한 통일이야기|나는야, 통일 1세대’ (천재교육출판사)라는 책자가 어린이들의 글의 일부를 왜곡시킨 채 저자(한국외국어대학교 이 교수·)의 의도대로 이용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라는 내용.

나. 제92면, 제93면에서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조차 ‘김일성과 김정일의 못된 마음을 안다면 북한 국가를 쓸 수는 없고 우리 애국가를 써야 할 것’ 이라 했지만, 경실련 통일정책위원장이며 지난 6월까지 통일원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이 교수는 이를 묵살한 채 ‘통일이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애국가도 다시 생각해야 할 것’ 이라 한 것이다. 이로써 독자들은 글 쓴 어린이조차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오인하게 됐다.”, “그러나 저자는 권양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글을 쓰고서 자신의 글에 방해가 되는 어린이의 글은 삭제한 채 책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라는 내용.

다. 제96면에서 한 교사가 “아이들의 글을 이용한 데 대해 분개하는 마음입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글을 쓰게 해서 악용한 사람들이야말로 천벌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한 내용을 인용하는 등 다수의 교사들이 아이들의 글이 왜곡되어 이용된 것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을 인용하는 내용.

라. 제99면에서 “지난 6월초 기자는 저자 이 교수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은 적이 있었다. 그때 이 교수는 자신도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이라며 ‘인권편은 제2권에서 따로 펴낼 계획이었다’ 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서를 살펴본 결과 제2권은 경제, 사회, 문화를 다루기로 명시돼 있었고 ‘북한 인권편’이란 항목은 기획 초기부터 아예 없었음이 밝혀졌다.” 라는 내용.

2.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월간조선>에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적 주장이 공표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및 게재방법

반론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은 별지 제1목록,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있으나, 반론을 제기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를 고려할 때 신청인이 구하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 중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원문 기사 부분의 크기 및 게재 면수, 반론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4.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지 조선일보 1997년 8월 29일자 제3면에서 [나는야, 통일 1세대] 라는 제목으로 한 보도(이하 이 사건 신문보도라 한다)에 의하여도 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신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첫째,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의 보도를 대상으로 할 것, 둘째,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받았을 것, 셋째, 보도내용과 피해자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먼저 이 사건 신문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갑 제2호증(사설)에 의하면 이 사건 신문보도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3면의 ^사설(社說)}란에 보도된 것인데 통상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 등 고정적인 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보아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신문보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나 어린이들의 통일에 관한 글이 누구에 의해선지 침식되는 등 변형된 사실이 드러난 이 시점에서(월간조선 7~9월호 보도)...” 라고 하여 일부 사실적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는 먼저 이 교수가 이 건에 대해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어린이들의 글을 특정한 시각에서 취사선택한 일은 없는지, 그리고 자신의 시각에 맞게 몇 줄씩 뺀 일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지식인의 소신으로 말해야 한다.”, “이 교수가 혹시라도 어린이들의 글을 재편집함으로써 그들의 본래의 생각을 변형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라고 하여 궁극적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특정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조선일보 편집진의 ^의견}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문보도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신문보도에 관한 신청인의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8.

재판장 판사 이 규 홍

판사 오 석 준

판사 서 경 환

<별지 제1> 반론보도문

) 대체목 : 月刊朝鮮의 계속된 왜곡보도, 李 〇〇 교수는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라고 주장한 적 없다.

) 중제목 : 1. 한국외국어대학교 李 〇〇 교수의 저서 “나는야, 통일 1세대” 는 어린이를 위한 건전한 통일교육도서다.

2. 李 〇〇 교수, 편집·첨삭과정에 관여한 사실 없다.

3. 李 〇〇 교수, 초등학생들의 원고를 삭제·수정·왜곡·변형한 사실 없다.

<별지 제2> 반론보도문

) 대체목 : 月刊朝鮮의 계속된 왜곡보도, 李 〇〇 교수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라고 주장한 적 없다.

) 중제목 : 1. 한국외국어대학교 李 〇〇 교수의 저서 “나는야, 통일 1세대” 는 어린이를 위한 건전한 통일교육도서다.

2. 李 〇〇 교수, 편집·첨삭과정에 관여한 사실 없다.

3. 李 〇〇 교수, 초등학생들의 원고를 삭제·수정·왜곡·변형한 사실 없다.

) 본문 : 1. (주)조선일보사가 발행한 月刊朝鮮 1997년 9월호는 그 표지의 중앙부분에서 “통일원 통일 캠페인 참고도서에 글을 쓴 두 어린이가 말하는 왜곡 사례 [왜 빠졌어요? 그럼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인가요?] ” 라고, 그 차례의 첫부분에서 “통일원 통일 캠페인 참고도서에 글을 쓴 두 어린이가 말하는 왜곡 사례 。어? 왜 빠졌지요? 그럼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인가요?。” , “。통일이 되어 모든 것은 바뀌어도 애국가만은 바꿀 수 없다. 고 쓴 어린이의 글을 。애국가 뿐 아니라 국보·명절·수도·지폐에 새길 인물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식으로 왜곡했다. 李 〇〇 ” , “。이상한 통일 캠페인. 문제제기에 대한 통일원의 。이상한. 고집, 。그런 기발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禹 〇〇 ” 라고 각 보도한 다음 그 본문의 제90쪽에서부터 제109쪽에 걸쳐 머릿기사(톱기사)로 한국외국어대학교 李 〇〇 교수가 “나는야, 통일 1세대” 책을 쓰면서 위 책에 실린 두 초등학생의 글을 임의로 삭제하였고, 그 결과 위 두 어린이의 글을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인 것으로 왜곡·변형하

였다고 보도하였다.

2. 그러나 李 교수는 초등학생들의 자필 원고를 직접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그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왜곡·변형한 사실이 없다.

月刊朝鮮은 “나는야, 통일 1세대” 책(천재교육출판사, 1995년 10월 발행 ; 이하 ^이 책}이라 함) 15쪽에 실려 있는 權모 양의 글을 제시하면서 李 교수가 權 초등학생의 자필원고에 있는 내용 중 <또 북한주민에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못된 마음을 알려주어야 하겠다. 그러면 북한 國歌를 애국가로 쓰자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애국가는 그대로 쓰고…。 나의 상상대로 될 통일을 하루 빨리 오도록 고대해야...(뒤페이지 망실)>라는 구절을 위 학생도 모르게 삭제한 다음 위 글 다음 페이지에서 삭제된 權 학생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글을 썼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李 교수는 月刊朝鮮이 지적하는 초등학생 2명의 글이 이 사건 기사와 같은지에 대해서도, 李 교수는 위 초등학생들의 자필 원고를 직접 검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月刊朝鮮에 실린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李 교수는 초등학생들의 자필 원고를 직접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李 교수가 초등학생들의 자필 원고를 삭제하거나 왜곡시킬 수도 없고 또 자필 원고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왜곡한 사실도 없다.

李 교수는 위 책의 출판사 편집자로부터 그가 초등학생들의 자필원고를 정리하여 타이핑한 자료를 받아 그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며 이러한 편집과정은 月刊朝鮮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3. 이 책은 모두 27개 주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주제별로 두 어린이의 글이 각각 한 줄씩 실려 있으며 어린이들의 글 뒤에는 매 항목마다 李 교수의 글이 두 쪽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통상 아동용 도서는 그 분량이 200쪽을 넘으면 아동들이 책을 읽는데 부담을 갖기 때문에 전체 책의 분량이 200쪽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출판사의 편집상 원칙이다. 이를 위해 출판사의 편집자는 한 학생의 글이 1쪽을 넘어서는 경우 전체적인 줄거리(주제)에 맞춰 다듬게 되는데 月刊朝鮮이 ‘왜곡’ 이라고 주장하는 2개의 사례는 각 자필 원고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 글 전체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쪽 분량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4. 月刊朝鮮은 이 사건 기사의 취재과정에서 어린이 글들의 첨삭과정을 저자인 李 교수가 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기사는 그가 신문사 편집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첨삭과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출판사의 편집진에게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조선>은 시종일관 최초 자필 원고의 첨삭과정에 李 교수가 개입한 것으로 허위보도하였다. 그러나 李 교수는 이 책에 실린 초등학생들의 자필 원고를 삭제하거나 왜곡·변형한 사실이 없으며 또 이 책의 출판사 편집자도 초등학생들이 쓴 원고를 왜곡·변형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출판·편집함에 있어서 기술상의 첨삭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5. 그런데도 月刊朝鮮은 이 사건 기사에서 초등학생들의 글을 李 교수가 의도적으로 왜곡·변형한 것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기만하였다.

더욱이 취재기자라는 이 은 천재교육출판사 소 실장에게 이 책 15쪽에 실린 權 학생의 글을 저자인 李 교수가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고 마치 취조하듯이 따졌

으나, 위 소 이 “출판사에서 저자에게 원고 검토를 의뢰하거나 코멘트를 요구할 때 육필로 쓴 원고 그대로를 주면서 의뢰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저자는 당연히 편집자가 편집상 뺀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글을 썼을 것이다.” 라고 밝혔음에도 위 이 은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채 이 사건 기사와 같이 왜곡기사를 쓴 것이다.

6. 한편 위 권 학생이 썼다는 자필 원고와 이 책에 실린 위 학생의 글을 살펴보다도 그 문맥이나 의미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이 은 마치 무슨 엄청난 비밀이나 발견한 양 과장 보도하였다.

月刊朝鮮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기도 안산시 경일초등학교 權모 양은 。통일이 되면 바뀔 게 많겠네. 라는 제하의 자필 원고에서 。나라 이름도 바뀔 것이며 노래도 바뀌고 국기도 바뀔 것 같다. 며 다음과 같은 구절을 연필로 또박또박 써 놓았다.

<또 북한주민에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못된 마음을 알려주어야 하겠다. 그러면 북한 國歌를 애국가로 쓰자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애국가는 그대로 쓰고…。나의 상상대로 될 통일을 하루 빨리 오도록 고대해야…(뒤페이지 망실)>” 라는 것인데, 이 글의 내용과 李 교수의 글과는 상반되지 않는다.

7. 오히려 月刊朝鮮이 권 학생의 자필 원고를 왜곡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위 학생은 ‘북한 국가’ 를 ‘애국가’ 로 쓰지 말자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데도, 月刊朝鮮은 이를 李 교수가 이 책에서 애국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으로 소개했다는 것이나, 李 교수가 쓴 글을 전문 그대로 읽어보면 단지 ‘바뀔 수도 있다’ 는 취지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즉, 李 교수가 이 책에는 ‘서울 신정국민학교 6|5 이 ’ 이 쓴 글임을 밝히면서(14쪽) “우리 민족은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통일이 되면 정말로 바뀔 것이 많다.

나라 이름은 어떻게 바뀔까? 남북이 갈라지기 전의 조선이나 고구려로? 하지만 옛날 이름으로 바뀌면, 연대표에 똑같은 이름이 나타나므로 옛날 나라와 요즘 나라를 구별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나는 김정일이나 북한 주민들의 협조가 있다면,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어색함이 없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냥 썼으면 좋겠다.

국기와 나라꽃도 달라져야 한다. 국기는 흰 바탕에 태극무늬만 넣으면 어떨까? 또 나라꽃으로는 동방의 하얀 꽃이란 뜻으로 동백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애국가는 요즘 유행하는 서태지나 김건모의 랩송으로? 아니면 북한 노래로? 나는 애국가가 은은한 느낌을 주는 가곡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안산 경일국민학교 5|5 권 ’ 가 쓴 글이라고 소개하면서(15쪽) “우리의 소원대로 통일이 되면 어떨까? 물론 바뀔 것도 많겠지.

나라 이름은 어쩌면 한국연합국으로 바뀔 것이다. 남한, 북한 모두 ‘한’ 자가 들어 가고, 통일이 되어 합쳐진 민족이니까 나라 이름으로는 한국연합국이 제격이다.

통일이 되면 국기나 나라꽃이 바뀌겠지. 정치가들이 통일세금이란 세금을 거두어 국기와 나라꽃 바꾸기 회의에 쓸 것 같다.

국기는 북한기와 남한기를 복합한 기였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옛 북한과 남한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마찰을 빚는 일이 없을 테니까 말이다.

나라꽃은 아카시아가 가장 좋을 것 같다. 우리 한 민족의 청결함과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에 딱 맞는 흰색에다 달콤한 향기까지 있으니까.” 라고 되어 있으며, 李 교수는 위와 같은 초등학생들의 의견에 대하여(16~17쪽) “통일이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바뀔 것이 많겠네요. 나라 이름, 국기, 나라꽃, 애국가 뿐만 아니라 국보, 명절, 수도, 지폐에 새길 인물까지도 다시 생각해야 할 거예요. 아마 바뀌는 것을 찾는 것보다 안 바뀌는 것을 찾는 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중략) 여기에서 우리는 남북한이 어떠한 통일 과정을 밟아가느냐에 따라 통일 뒤의 사회가 크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식이나 북한식이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어떤 체제가 되든 자유, 인권, 사회복지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라고 기술하였다.

8. 위와 같이 권 학생의 글은 그 전체 문맥이나 또 그 앞에 실린 이 학생의 글과 연결해서 살펴볼 때 ‘애국가’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그의 글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런데도 月刊朝鮮은 이 사건 기사에서 “지면 부족으로 權양의 글이 삭제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삭제된 부분을 저자가 정반대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李 교수의 다음 글을 인용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바뀔 것이 많겠네요. 나라 이름, 국기, 나라꽃, 애국가 뿐만 아니라 국보, 명절, 수도, 지폐에 새길 인물까지도 다시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李 교수는 권 학생의 자필 원고의 내용을 정반대로 강조한 사실이 없다. 李 교수의 위 글은 권 학생의 글 중에서 특별히 ‘애국가’ 에 중점을 두고 쓴 것이 아니라, 권 학생과 이 학생의 글과 함께 실려 있는 ‘서울신정국민학교 6|5 이 ’ 학생이 쓴 글 중 두개의 글을 종합해 볼 때 통일 이후에 바뀔 것이 많겠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기술한 것이다.

9. 이상과 같이 李 교수는 권 학생의 글이 이 책 출판사 편집자에 의하여 수정된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사 권 학생의 자필 원고를 모두 보았다고 하더라도 李 교수의 글 내용이 바뀔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권 학생의 글 바로 앞쪽에 있는 이 학생의 글(14쪽) “나라 이름, 국기, 나라꽃도 달라져야 한다.” 면서 “마지막으로 애국가는 요즘 유행하는 서태지나 김건모의 랩송으로? 아니면 북한 노래로? 나는 애국가가 은은한 느낌을 주는 가곡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 는 내용이기 때문에, 李 교수는 이를 감안하여 “통일이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바뀔 것이 많겠네요. 나라 이름, 국기, 나라꽃, 애국가 뿐만 아니라, 국보, 명절, 수도, 지폐에 새길 인물까지도 다시 생각해야 할 거예요. 아마 바뀌는 것을 찾는 것보다 안 바뀌는 것을 찾는 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라고 기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사 권 학생이 당초 썼다는 자필 원고를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책의 내용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10. 그런데도 月刊朝鮮은 잘못된 그의 보도(월간조선 1997년 7월호)에 대한 정당성을 마치 이 자필 원고에서 찾았다는 착각에서인지, 이 사건 기사에서 위 권 학생의 글을 ‘李 교수’ 가 뺀 것은 李 교수가 이 책을 용공도서로 저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만약 權양의 글이 삭제되지 않고 실렸다면 저자는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그 근거로 李 교수는 “당시 열한 살이던 權양이 원고를 통해 。 김일성과 김정일의 못된 마음. 을 거론한 이상 저자는 무비판적으로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 과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어린 시절. 을 학습하는 북한 어린이들

의 생활을 소개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 김정일 동지의 노래. 나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 시절. , 。 친애하는 김정일 장군. 등도 아무 비판 없이 실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며, 또 權양이 。 김일성과 김정일은 못된 사람. 임을 명시한 이상 저자는 權양의 글에 동의하는 내용의 글을 실거나, 혹은 權양의 생각이 틀렸다면 그것을 지적해 주는 글을 실었어야 했을 것인데 저자는 權양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글을 쓰고서 자신의 글에 방해가 되는 어린이의 글은 삭제한 채 책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권 학생의 글은 전체적으로 이 책에 충분히 소개·반영되어 있으며 권 학생의 글과 이 책에 실려 있는 。 김정일 동지의 노래. 나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 시절. , 。 친애하는 김정일 장군. 부분과는 각 서로 다른 주제의 항목에서 기술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논리상으로도 편집상으로도 전혀 연결되지 않음이 명백하며李

교수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찬양고무하기 위해서 쓴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책에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 과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어린 시절. 을 학습하는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과 。 김정일 동지의 노래. 나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 시절. , 。 친애하는 김정일 장군.” 이라는 문구가 실린 이유는 이 책이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알려주는데 그 1차적인 목적이 있어서이며, 실제 북한에서는 ‘김일성 장군’ 노래가 북한의 ‘애국가’ 보다 더 불리우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은 학생들에게 오히려 북한이 얼마나 1인 독재체제인가(‘애국가’가 아닌 ‘개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李 교수는 이 책에서 “대신…김일성 장군의 노래는 평소 작은 행사 때라도 반드시 부릅니다. 곡도 탁아소와 유치원 때 이미 배우지요.” 라고 기술한 것이다. 더욱이 위 노래를 비롯한 북한의 ‘애창곡’ 들은 KBS-TV, MBC-TV 등에서 그대로 (자막까지 붙여서) 방송되고 있는데 이를 시청한 모든 국민들은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위 방송의 내용이 북한을 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노래에서 독재체제와 1인승배, 그리고 사회주의적 음악의 비예술성을 느낄 뿐이듯이 이 책의 위 부분도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11. 그렇지 않고 만약李 교수가 이 책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할 목적이었다면 이 책의 곳곳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북한에 ‘암시장’이 존재하고 쓰레기 소각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는 기관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계곡에 함부로 버려 북한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점(36쪽), 기차의 상습적인 연착과 기차 안에서 소매치기의 활개(66쪽), 양력설에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동상을 참배하고 김정일의 새해연설을 강제로 들어야 하는 일(84쪽), 북한은 여행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는 것(96쪽), TV의 절대적 부족(120쪽), 청바지가 한 달 월급의 5배나 될 정도로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점(90쪽), 김일성 집안 중심으로 역사를 왜곡한 점(150, 151쪽),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미래는 신라의 경순왕의 경우처럼 대한민국에 귀순하던가 아니면 동독의 호네커의 경우처럼 망명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155쪽), 의료시설과 약의 부족으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는 점(156쪽) 등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어려움과 잘못된 점도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李 교수는 대한민국 주도하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의 평화적 통일을 상정하며 이 책을 쓴 것이다. 이것은 이 책 17쪽에서 “어떠한 체제가 되든 자유·인권·사회복지가 귀중히 여겨져야 한다.” 라고 밝힌 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 책의 북한이야기 ‘쓰레기’ 편에서는(56쪽) “이렇게 재활용하는 데도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답니다. 쓰레기 처리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는 기관도 없기 때문이에요. 동네 사람들끼리 차례를 정해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모든 쓰레기를 가까운 계곡에 그냥 버리기 때문에 북한도 환경오염이 심해요.” 라고,

북한이야기 ‘기차’ 편에서는(66쪽) “먼 거리 여행을 할 땐 거의 기차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기차 여행은 그렇게 편한 게 아니랍니다. 기차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오기 일쑤이고 어떤 때는 아무 말도 없이 하루종일 안 오는 일도 많다니까요. 게다가 사람은 많은데 다니는 횟수는 적어서 기차는 사람들로 뺨뺨하답니다. 그래서 기차가 오면 여행객들은 먼저 타려고 기를 쓰지요. 북한에서는 기차칸을 ‘뽕통’ 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뽕통 지붕 위에 올라간대요. 기차칸의 전구도 사람들이 다 빼 가버려 어둠을 틈타고 소매치기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대요. 승객들이 짐을 기차 선반에 묶어 두면 그 끈까지 칼로 잘라간다니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되겠죠?

기차표 없이 몰래 타는 사람도 많대요. 단속원이 오면 뽕통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의자 밑에 숨거나 아예 열차에서 뛰어내리기도 한대요. 이런 걸 보고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남공작대 훈련하는군” 라고,

‘통일되면 북쪽에도 미니스커트가 유행할까’ 라는 부분에서는(88~89쪽) “통일 뒤에 어떤 노래가 유행할까를 알고 싶으면, 그때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어떨까를 따져보면 좀 감이 잡히겠지요? 예를 들면 통일이 된 직후에는 사람들이 온통 기쁨으로 들뜰 거예요. 그러면 통일의 감격을 노래한 곡이 나오겠지요. 통일 뒤에는 북한 주민들이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아마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고달픔을 노래하는 유행가도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라고,

북한이야기 ‘옷차림’ 편에서는(90쪽) “옛날엔 북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보면 옷이 딱 두가지. 남자들은 인민복에 레닌모를 쓰고, 여자들은 흰저고리에 검정통치마를 입었지요. 그러면 북한에는 우리가 흔히 입는 청바지는 없을까요? 1989년 남한의 대학생이던 임수경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북한에도 청바지 열풍이 일었다고 해요. 그러나 값이 노동자 한 달 월급의 네다섯 배나 되어서 당간부 자식이나 북송 교포의 자녀들이나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고,

북한이야기 ‘여행’ 편에서는(96쪽) “북한은 여행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행을 하고 싶으면 신청서를 내고 사회안전부에서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하지요.(그리고 평양과 개성, 휴전선 가까운 지역을 여행할 때는 붉은 줄이 그어진 특별여행증이 필요해요.) 여행증명서를 받으려면 일주일 정도가 걸린대요. 그런데 만약 병으로 쓰러지신 부모님께 가야 하는 사람은 어찌겠어요? 급한 사람은 뇌물을 건네 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하루나 이틀만에도 여행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행을 제한하는 데다 기차가 워낙 콩나물 시루라서, 북한 주민들은 결혼이나 부모님 장례를 치를 때나 여행을 해요. 우리처럼 관광이나 낚시, 등산 등을 즐기기 위한 여행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라고,

‘북한 사람들도 종교를 가질까’ 라는 부분에서는(100~101쪽) “공산주의 나라라고 해서 종교를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답니다. 하지만 ‘종교는 아편이다’ 라는 말처럼 공산주의자들은 종교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인지 북한 사람들 중에는 종교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현재 북한 사람들 가운데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약 5만명 정도 뿐이랍니다. 천도교 신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기독교와 불교 신자라고 하지요. 사실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에겐 김일성 교조주의가 마치 종교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통일이 되는 경우 북한 사람들은 이제

까지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생각의 혼란을 느낄 거예요. 아마 이 때 종교가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주겠지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후 소련과 동구에서는 신흥종교가 성행하고 있다는데, 북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남한 종교인들은 벌써부터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북한에서도 걸론 제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몰래 몰래 제사를 지내고 있대요. 통일이 된 후에 북한에서도 제사가 되살아나리라 생각되는군요.” 라고,

북한이야기 ‘회갑 잔치’ 편에서는(102쪽) “회갑 잔치는 예수 살 되신 부모님께 축하를 드리고 더 오래 사시기를 기원하는 우리 전통 풍습입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60청춘, 90환갑’. 북한에서는 물자를 절약하고 예수 노인도 젊은이 못잖게 일할 수 있다며 회갑 잔치를 금지시켰던 것이지요. 그러나 배급쌀을 아껴서 부모님 회갑에 간단한 상을 차리는 일은 몰래몰래 계속되었답니다.” 라고,

‘북한 어린이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까’ 라는 부분에서는(106~107쪽) “북한 어린이들은 자라나는 새싹으로서 그 부모세대보다 새로운 체제에 더 쉽게 적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50대 이상은 분단 이전 어렸을 때의 자본주의 경험을 되살리면 되겠고, 젊은 세대는 새롭게 적응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30대, 40대는 전혀 자본주의 경험이 없는 데다 새로이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기에는 이미 몸과 머리가 굳어 버렸대요. 이렇게 볼 때, 북한 어린이들은 통일을 완성시키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게 되는 경우 남한 어린이들은 당연히 북한 어린이들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남한은 북한보다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앞서기 때문에, 북한 어린이들은 처음엔 좀 서투를지도 모르거든요.”

라고,

‘단군의 무덤을 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는(130~131쪽) “북한 사람들이 쓴 국사책을 보면 우리와 다른 내용이 참 많습니다. 아마 북한 사람도 우리가 써 놓은 국사책을 읽으면 다른 점이 많아서 놀랄 거예요. 북한에서 귀순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과목이 국사였다잖아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의 국사에서 반드시 바뀌어야 할 내용이 있답니다. 우선 북한에서는 그 동안 김일성 집안을 중심으로 국사의 내용을 바꿔 버린 것이 많습니다.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 등을 주인공으로 세워 역사를 왜곡시킨 것이지요. 이런 잘못은 통일이 되면 두말 할 것도 없이 고쳐질 것입니다.” 라고,

북한이야기 ‘여가’ 편에서는(150쪽) “북한의 어른들은 휴일에 무얼 할까요. 운동? 일? 학습? 높은 자리에 있는 간부들은 사냥도 하고, 볼링도 하고, 골프도 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겐 그런 운동은 그림의 떡일 뿐이지요. 그런 운동을 하려면 볼링장이나 골프장 같은 곳엘 가야 하는데, 값이 비싼 데다가 잘 모르는 운동이라서 잘 하지 못하대요. 보통 어른들은 공휴일엔 거의 밀린 집안일을 합니다. 가끔은 유원지나 공원으로 소풍가거나, 강이나 호수가에서 낚시도 하지요. 보통 때는 일이 끝나도 회의, 사상학습 등을 하느라 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쉴 틈이 생기면 장기를 잘 두지요. 북한에선 커다란 장기판 앞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장기두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라고,

‘김정일은 쫓겨날까’ 라는 부분에서는(154~155쪽) “고려는 신라라는 나라를 전쟁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합쳤지요. 옛날과 똑같은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 남북한의 통일도 다시 한번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통일된 동서독의 경우에도 민심이 이미 서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동독의 호네커 수상은 민심이 돌아선 것을 모르고 끝까지 통일을 반대하다가 결국은 철

레로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통일 정책도 구체적으로 북한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끌어가야 하지요. 그리고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미래는 이러한 통일 과정에서 경순왕이나, 아니면 호네커 수상이나의 역할로 판가름날 것입니다.” 라고,

북한이야기 ‘병원’ 편에서는(156쪽) “하지만 병원의 시설과 약이 부족해서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입원할 때 환자가 페니실린, 비타민 같은 약을 암시장에서 구해야 하고, 병실이 모자라서 환자를 바닥에 눕히기도 한답니다.” 라고,

‘임진각의 철마는 다시 달릴까’ 라는 부분에서는(160쪽) “통일이 되어 다시 철도가 연결된다면 그 철마는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마 철도는 연결되겠지만 그 철마는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녹슨 지 아주 오래된 데다가, 옛날 기차라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더구나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운반되는 물건의 양은 날이 갈수록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바쁜 사람들과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빠르게 옮기기엔 이 철마는 너무 구식이에요. 비행기로는 한 시간 남짓 걸리는데, 이삼 일이라니... 누가 이용하려고 하겠어요?” 라고,

북한이야기 ‘북권’ 편에서는(168쪽) “그 동안 북한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상금을 타는 것은 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일이라며 북권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1985년에 경기장 지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북권도 만들게 되었어요. 1991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인민북권은 한 장에 50원, 1등 상금이 만 원으로 노동자의 10년 월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지요. 하지만 북권 값이 일반 노동자 월급의 절반을 넘는 액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강제로 팔았지요. 그 후 북권 값을 10원으로 내리고 추첨 횟수도 늘렸지만 상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말썽이 자주 생긴답니다.” 라고,

북한이야기 ‘통일 징검다리’ 편에서는(174쪽) “은범 : 야, 북한에도 도둑이 있다잖아. 。 생활조절위원회. 잊어 버렸어?

재영 : 맞아. 워낙 물건이 부족해서 그렇겠지? 북한은 아등바등 안 살아도 되는 대신 가난하고, 남한은 부족한 건 없지만 기를 쓰고 돈을 벌어야 하고...

은범 : 그래도 난 가난한 것보다는 풍족한 게 좋아. 돈은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거잖아.” 라고, 각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생들의 글에 실린 내용까지 합치면 이 교수가 이 책에서 얼마나 많이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은 이런 책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이 책을 용공도서로 낙인찍었다.

도대체 月刊朝鮮은 어떤 근거에서 이 교수가 권 학생의 글을 이 교수가 정반대로 인용했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13. 이런 왜곡된 자세에서 이 은 이 교수가 초등학교생들의 글을 무단 삭제하였고, 그 결과 이 책이 용공도서라는 전제에서, 글 쓴 학생의 담임교사나 이 교수에 대하여 “제자의 글이 왜곡되어 이용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식의 유도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이 은 각 인터뷰 대상자들에 대하여 이 책의 내용과 학생들의 자필 원고를 모두 보여주고 나서 그들과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알려준 채 그들의 의견을 물어 이와 같이 보도한 것이다.

14. 月刊朝鮮은 그 두번째 근거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유지시켜 준다。(서울 공덕초등학교 林모 양의 글)。 삭제 및 변형 。。공산주의는 평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능력있는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능력없는 사람까지 먹여살리는, 다 같이 잘 살자는 뜻이 좋은 제도인데, 인간은 매우 착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지요。(저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란 언어는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林모 양)。 삭제”라는 요약을 실은 다음, “서울 공덕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林모 양의 글도 원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유지시켜 준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선 항상 전쟁준비에 자유란 언어도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林양의 이 글을 <공산주의 국가에선 항상 전쟁 준비를 한다>고만 소개한 다음 李 교수가 전문가의 설명란을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로, 남한은 자본주의로 소개하면서 林양의 사용한 。。남한은 민주주의。라는 구분을 。。바른 구분이 아니다。라고 못박고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에 대해 <공산주의는 평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본주의는 자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공산주의는 능력있는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능력없는 사람까지 같이 먹여살리자는 거예요. 다 같이 잘살자는 뜻이 좋은 제도인데, 기본적으로는 인간은 매우 착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지요>(22쪽)”라고 보도하였다.

그 결과 이 책은 “林양이 공산주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저자가 바로잡아 주기 위해 쓴 글인지, 아니면 林양의 삭제된 원고를 보지 못한 채 저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설명하고 있는지 모호한데 공산주의가 썩 괜찮은 제도처럼 어린이들에게 보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李 교수는 우선 임 초등학교생의 자필 원고를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月刊朝鮮이 위 학생의 글을 교묘하게 왜곡하였다.

이 사건 기사를 보면 위 이 은 “林양은 원고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썼는데, 책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묻자 위 임두리 학생이 “어? 왜 빠졌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자, 다시 이 이 “이 책에서 선생님(저자)은 林양이 말하고 있는 。。평등。을 공산주의 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라고 물었고, 이에 위 학생이 “그러네요. 공산주의가 평등을 강조하네요. 그럼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인가?…”라고 대답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위 대화의 문맥상 임 학생이 말한 빠진 원고의 내용과 이 사건 기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산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 은 <월간조선> 1997년 9월호의 표지 및 차례, 본문에서 이 과 임양의 대화내용의 중요부분을 빼버린 채 단지 “어? 왜 빠졌지요?”라는 말과 “그럼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인가?”라는 말만을 그대로 연결하여 보도함으로써 李 교수가 임 학생의 원고를 무단 삭제함으로써 그의 글을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왜곡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보도를 하였다.

15. 또한 月刊朝鮮은 李 교수가 쓴 이 책의 내용 중 “공산주의는 평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능력없는 사람까지 먹여살리는 다 같이 잘 살자는 뜻이 좋은 제도인데, 인간은 매우 착하다는데서 출발하고 있지요.”까지만 인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왜곡보도하였다. 李 교수는 위 글에(23쪽) “그러나 오랫동안 자본주의 나라들과 힘을 겨루던 사회주의 나라들은 지금은 거의 무너졌답니다. 몇 년 전부터 소련과 동독을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 나라들이 자본주의로 바뀌었지요.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직장과 집을 정부가 다 구해 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대충대충 하고 노력하지 않

왔던 거예요. 그러니 노력하면 그만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는 결국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골고루 잘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도 통일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로 되는 것은 처음엔 어려움이 좀 있을지 몰라도 역사의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술하였다.

이처럼 위 글은 공산주의가 소멸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그 도입부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 하고 있는 것인 데도 이 사건 기사는 악의적으로 위 글의 대부분은 빼버리고 그 도입부만을 인용하면서 이 글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16. 위 글은 공산주의가 소멸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그 도입부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 하고 있는 것인 데도 이 사건 기사는 악의적으로 위 글의 대부분은 빼버리고 그 도입부만을 인용하면서 이 글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글은 위 글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위 글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위 글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위 글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위 글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위 글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단지 위 글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위 글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위 글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편집 방침과 원칙은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필 원고와 이 책의 해당부분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즉 (1) 26쪽 박 학생의 글 중에서 “통일이 되면 수도는 어디에? 그 후보로 평양, 개성, 서울, 부산 등이 있다. 크게 말하면 평양과 서울이다. 수도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도시이므로 제일 발달되어야 한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또 그곳이 땅이 치우쳐져 있지 않고 중심이어야 한다.” 라는 자필 원고 부분,

(2) 27쪽 남 학생의 글 중에서 “서울특별시와 평양의 38선을 가로 두고 통일이 되면은 수도는 어디로 정할지 궁금하다.” 및 “그러면은 남한과 북한의 경계가 순수하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된다.” 라는 부분,

(3) 38쪽 김 학생의 글 중에서 “그런데 언제 다가올 지 모르는 통일이 지난 후에 행정구역은 어떻게 변하여 있을까?” 및 “통일이 되면 북한의 행정구역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겠다. 고민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

(4) 44쪽 황 학생의 글 중에서 “철조망! 많은 것을 갈라 놓았다. 가족과 사랑 그리고 나라를! 나라를 갈라 놓았다.” 및 “중간에 그어진 빨간선이 없어지겠지. 철조망이 다시는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어디에도 말이다.”, “훼손되지 않은 깨끗한 곳은 본 지 오래됐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철조망만 없다면 2개로 갈라진 분단된 땅은 없었을 텐데. 그어진 지도의 빨간선, 언젠가는 지워지겠지만 하루 빨리 보기 싫은 빨간선이 지워졌으면 좋겠다. 가족과 사랑 그리고 나라가 합하여 진다면 통일이 되어도 뜻이 척척 맞을텐데. 어떻게 해서 인지는 몰라도 남과 북이란 곳으로 갈라져 살아온지 50년인데, 지금쯤이면 통일하며 그 미

운 오리새끼처럼 있는 철조망을 없애면 좋겠다. ‘하루 빨리 빨간선이 지도에서 지워지기를...’ ” 라는 부분,

(5) 45쪽 박 학생의 글 중에서 “통일이 된다면 분명히 휴전선은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없어질까?)는 의문점에 한 가지” 및 “또 남겨서 지금까지 생태계를 잘 보존해 준 철조망의 보답(?)으로 거기에 있는 비무장 지대 반정도를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생물의 관찰과 어린이들의 학습 장소로도 알맞은 것이다.” 라는 부분,

(6) 50쪽 안 학생의 글 중에서 “통일이 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을 다시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뽑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및 “통일이 되면 서로 인구들이 섞여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도 복잡하지만 국회의원은 어떻게 할까?” 라는 부분,

(7) 51쪽 김 학생의 글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튼튼한 기둥인 정부가 자리잡고 있으며 지방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있다.” 라는 부분,

(8) 105쪽 안 학생의 글 중에서 “통일이 되면 우리는 교육은 발전할 것이다.” 및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 가지가 발전하지 못한다면 미래를 달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교육시설을 좋게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

(9) 111쪽 최 학생의 글 중에서 “지금의 과목들은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그리고 도덕, 실과, 체육, 미술, 음악 등 예체능의 과목이다.” 및 “그러나 그것으로 하여금 후손들에게 형제는 서로 싸우지 아니하며 같은 민족끼리는 더더욱 싸우지 아니해야 한다는 교훈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 158쪽 강 학생의 글 중에서 “어느날, 긴급 뉴스에서 통일이 되어 철마가 다시 달리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나는 아주 기뻐할 것이다.” 및 “옛날에 이 철마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 철마를 보는 마음은 어떨까?”, “만약 내가 북한에 가게 된다면 그때에도 철마를 타고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북한에 가면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어서 통일이 되어 철마를 타고 북한에 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라는 부분,

。。 159쪽 김 학생의 글 중에서 “이 의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였다. ‘철마’ 오래전부터 움직이지 않던 철마... 옛날부터 움직이고 싶었던 철마는 우리가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즉 북과 대화하여 통일협조에 대해서 의논하고 서로 타협으로 통일을 이룩하려고 하였다.” 라는 부분,

。。 153쪽 남 학생의 글 중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였다.” 라는 부분,

。。 164쪽 오 학생의 글 중에서 “휴전선은 남과 북의 군대가 대치하면서 서로가 침범할 수 없도록 지키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한 가운데를 가로로 나누고 있다.” 라는 부분,

。。 165쪽 진 학생의 글 중에서 “비무장 지대는 휴전선 근처에 있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비무장 지대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부분,

。。 170쪽 이 학생의 글 중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산인 백두산에는 아름다운 천지가 있다. 비록 가 보지는 못했지만, TV나 사진으로 보았던 천지는 남한의 더러운 낙동강과는 대조적인 깨끗한 한 폭의 그림같은 모습이였다. 이런 깨끗한 천지가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난 여러 생각을 해 보았다.” 및 “통일이 되어 백두산 천지처럼 맑은 물이 한반도 전체에 흐른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도 천지의 물처럼 맑아지는 기분이다.” 라는 부분,

。。 171쪽 이 학생의 글 중에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 백두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서 외국에도 알리고 자연도 보호하면 참 좋겠다.” 라는 부분 등이 출판사의 편집방침과 편집원칙에 따라 편집과정에서 수정되어 삭제, 조정되었다.

이렇듯 당시 李 교수나 이 책의 출판사 편집자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초등학생들의 글을 왜곡·변형하지 않았다.

만약 李 교수나 위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초등학생들의 원고를 왜곡·변형하여 공산주의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으로 만들었다면 154쪽 송 학생의 글 중에서 “자유를 얻은 북한 사람들은 김정일을 대통령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의 생일 행사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사람들이 40여년 동안의 고생과 눈물을 김정일이 김일성 대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 155쪽 남 학생의 글 중에서 “우리는 통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김정일은 통일을 하기 싫은지 정상회담을 갖지 않고 있다.” 라는 부분, 99쪽 곽 학생의 글 중에서 “북한이 종교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나라에서 김일성만 믿으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북한사람들은 자유로이 종교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삭제했을 것이다.

그런 반면 이 책 출판사의 편집자는 분량이 적은 원고의 그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 예를 들어 이 책 152쪽에 실려있는 송 학생의 글 “자유를 얻은 북한 사람들은 김정일을 대통령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의 생일 행사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사람들이 40년 동안의 고생과 눈물을 김정일이 김일성 대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과 153쪽 남 학생의 글 “우리는 통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김정일은 통일을 하기 싫은지 정상회담을 갖지 않고 있다.” 등의 내용이 그러하다.

17. 또한 月刊朝鮮은 “。북한 인권. 부분은 이 책이 아니라 이 책의 속편에서 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에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이 책의 출판목적상 이를 수록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李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李 교수의 주장과 달리 “。북한 인권. 부분은 아예 기획조차 안됐다.” 라는 소제목을 붙인 다음, “지난 6월 초 기자는 저자 李 교수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은 적이 있었다. 그때 李 교수는 자신도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이라며 [인권편은 제2권에서 따로 펴낼 계획이었다] 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서를 살펴본 결과 제2권은 경제, 사회, 문화를 다루기로 명시돼 있었고 。북한 인권편. 이란 항목은 기획 초기부터 아예 없었음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저자 李 교수는 언제부터 개입하게 된 것일까.” 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李 교수는 이 책의 속편인 제2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룰 계획이었으며 출판사와 기획까지 마쳤었다. 이 사실은 천재교육출판사의 소 기획실장이 이 으로부터 “출판사에서 ‘李 교수와 출판을 논의하기 전 단계인 최초의 기획단계’에서는 편집자가 손으로 쓴 분류에 인권이 빠져있지 않느냐” 는 질문을 받고 “그곳에는 인권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러나 2권기획서에서는 46번 북한정치범과 수용소 등의 처리문제, 48번 김일성을 우상시하는 것 등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룰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고 말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은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기사에서 “다른 질문 한 가지 드리죠. 기획단계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출판사에서 입수한 기획서에는 애당초부터 북한 인권은 없었습니다. (李 교수) [아니오. 그것은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李교수는 두터운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몇 분이 흐른 뒤 [분명히 봤는데..., 북한사회 부분에 기획번호 46번으로 북한의 정치수용소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봤어요] 라며 [다시 찾아오겠다] 고 말했다.” 고 보도하여 마치 李 교수가 이 책의 최초 기획시부터

관여하였는데 그때부터 북한의 인권문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이 출판을 기획하는 일이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였거나 아니면 고의로 은폐하여 이 사건 기사에서 빼버린 데서 비롯된 왜곡보도다.

더욱이李 교수는 지난 8월 11일에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2차 중재기일 때 북한 인권 부분이 실려있는 편집기획을 확인했다고 이에게 고지했다.

18. 月刊朝鮮은 이 사건 기사에서 “보통 어린이들은 원고지 한 장을 메우기 힘들어 하는 반면 출판사에 제출된 원고들은 1인당 4~5매라는 점과 같은 학교의 서로 다른 어린이가 쓴 글에서 동일한 。예。가 등장하는 점을 지적해 냈다.”고 보도하여李 교수나 이 책의 출판사가 초등학생들로부터 글을 받을 때 미리 。주제。를 선정하여 의도하는 특정한 내용을 유도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李 교수나 이 책의 출판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19. 月刊朝鮮은 이 사건 기사에서 “李 교수 : [아이들의 순수한 상상력으로 만든 글이고 원고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최초 기사가 보도된 이후) 。 [나는 원고를 본 적도 없어요] (편집前 원고를 보여주자)”, “ [내가 쓴 글 중에서 어른들이 제일 중요한 걸 빼 버렸네요] |서울 공덕초등학교 林모 양”라는 소재목을 달아李 교수가 이 책에 실린 초등학생들의 자필 원고를 직접 검토·삭제하여 당초 원고의 내용을 왜곡·변형하였으며 취재기자와의 당초 인터뷰에서는 이를 숨겼다가 나중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李 교수는 이 책에 실린 초등학생들의 자필 원고를 직접 검토한 사실도 없고 따라서 위 원고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왜곡·변형한 사실이 전혀 없다.

20. 한편 이 책의 출판사에서는 당초 이 책을 기획할 때 그 목차부분을 안기부 산하 내외 통신에 검토요청을 하고 그곳으로부터 자료를 협조받았으며,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는 안기부(5부)와 전(全)언론기관, 관계기관에 책을 보냈고, 이를 받아 본 ‘조선일보’에는 신간서적으로 소개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대통령자문기구로서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관지인 ‘민주평통’에도 이 책이 크게 소개되는 등 지난 2년 동안 좋은 통일교육도서라고 호평을 받는 등 이 책은 이미 충분히 검증을 받았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 제3목록>반론보도문

) 제목 :李 교수, “。나는야 통일 1세대。” 책에 실린 초등학생들의 자필 원고를 침삭·편집하거나 그 내용을 삭제·수정·왜곡·변형한 사실 없다.

) 내용 : (주)조선일보사가 발행한 조선일보는 1997년 8월 29일자 3면 사설에서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제목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李 교수가 그의 저서 “나는야, 통일 1세대”에 실린 어린이의 통일에 관한 글을 일부 침삭하는 등 임의로 변형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李 교수는 。어린이를 위한 통일 이야기|나는야, 통일 1세대。(천재교육출판사, 1995년 10월 간행) 책에 실린 초등학생들의 자필 원고를 침삭·편집하거나 그들의 원고를 왜곡·변형한 사실이 없다.

아동용 도서는 통상 그 분량이 200쪽을 넘으면 아동들이 책을 읽는데 부담을 갖기 때문에 전체 책의 분량이 200쪽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출판사의 편집상 원칙이어서 출판사의 편집자는 한 학생의 글이 1쪽을 넘어서는 경우 전체적인 줄거리(주제)에 맞춰 다듬었는데 조

선일보가 ‘왜곡’ 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는 자필 원고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 글 전체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쪽 분량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李 교수는 1995년 봄 위 출판사로부터 위 출판사가 미리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학생들의 자필 원고를, 컴퓨터로 타이핑한 파일형태의 원고로 받아 여기에 해설을 한 것이어서, 李 교수는 초등학교생들의 자필 원고를 본 사실이 없으며, 그 당연한 결과로 李 교수가 초등학교생들의 자필 원고를 삭제하거나 왜곡시킬 수도 없고 또 자필 원고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왜곡한 사실도 없다.

출판사에서는 이 기자에게 이 책에 실린 초등학교생들의 자필 원고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위 학생의 글을 포함한 대부분의 글이 단지 그 분량이 너무 많거나 또는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주제와 무관하거나, 군더더기에 불과한 경우 출판사에서 편집기술상 이를 조정한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했고 또 “출판사에서 저자에게 원고 검토를 의뢰하거나 코멘트를 요구할 때 육필로 쓴 원고 그대로를 주면서 의뢰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저자는 당연히 편집자가 편집상 뺀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글을 썼을 것이다.” 라고 밝혔음에도 위 이 은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채 위와 같이 왜곡 기사를 쓴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보더라도 李 교수는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애국가는 그대로 두고” 라는 권 학생의 글과 “애국가는 은은한 느낌을 주는 가곡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는 이 학생의 글을 종합해서 단순히 중립적으로 통일이 되면 애국가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고 기술한 것이다.

위와 같이 李 교수는 물론이고 이 책의 출판사 편집자도 이 책에 실려 있는 초등학교생의 글을 의도적으로 왜곡·변형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제 李 교수의 이 책 내용을 왜곡·변형시킨 자가 바로 월간조선 소속 이동욱 기자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바르게 알려 주어야 한다.

반론보도청구인이

<별지 제4목록>

월간조선 1997년 9월호 제90면 이하 “어? 왜 빠졌지요? 그럼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인가요?!” 추적 통일원의 통일캠페인 참고도서에 글을 쓴 두 어린이가 말하는 왜곡·변형의 사례” 라는 제목하에 반론보도청구인이 지은 책 “어린이를 위한 통일 이야기 ‘나는야, 통일 1세대’ ” 와 관련하여 보도한 기사(이하 문제 기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문제기사에서는 “어린이를 통일이야기|나는야, 통일 1세대” (천재교육출판사)라는 책자가 어린이들의 글의 일부를 왜곡시킨 채 저자(한국외국어대학교 이 교수· 의 의도대로 이용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교수는 “나는야, 통일 1세대” 책에 실린 초등학교생들의 자필 원고를 직접 검토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첨삭·편집하거나 그들의 원고를 왜곡·변형한 사실이 없다. 이

교수는 1995년 봄 천재교육출판사로부터 위 출판사가 미리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들로부터 받은 자필원고를 정리하여 컴퓨터로 타이핑한 상태의 파일을 교부받아 이에 대하여 해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교수는 초등학교생들의 자필 원고를 직접 본 사실이 없으며, 그 당연한 결과로 이 교수가 초등학교생들의 자필 원고를 삭제하거나 왜곡시킬 수도 없다.

아동용 도서는 통상 그 분량이 200쪽을 넘으면 아동들이 책을 읽는데 부담을 갖기 때문에

출판사의 편집 원칙상 한 학생의 글이 1쪽을 넘어서는 경우 전체적인 줄거리에 맞게 다듬었는데 문제기사에서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두개의 사례는 자필 원고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 글 전체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쪽 분량에 맞게 기술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출판사 편집자도 위 책에 실려 있는 초등학생의 글을 의도적으로 왜곡·변형한 바가 없다.

문제기사 제99면에서는 “이 교수가 자신이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이라며 ‘인권편은 제2권에서 따로 펴낼 계획이었다’고 말한 바 있으나 출판 기획서를 살펴본 결과 제2권에서 ‘북한 인권편’이란 항목은 기획 초기부터 아예 없었음이 밝혀졌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 책의 속편인 제2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룰 계획이었으며 출판사와 기획까지 마쳤었다. 위 출판사의 기획실장도 2권에서는 46번 북한정치범과 수용소 등의 처리문제, 48번 김일성을 우상시하는 것 등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룰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반론보도청구인

□

。

신청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반론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1998. 2. 6.자 판결 (97카기6916)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1998년 2월 6일 <나는야, 통일 1세대> 저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교수와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가 주식회사 한국논단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한국논단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주식회사 한국논단은 월간지 <한국논단> 1997년 9월호에 “경실련 간부인 이 교수는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책이 은연 중에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남한을 비아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경실련 통일협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체제 수호세력에 도전하는 친공·친북세력”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신청인들은 법원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신청인 이 는 <나는야, 통일 1세대>가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표현물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신청인 이 와 관련한 보도내용 중 일부는 사건 책자의 내용과 저자인 신청인의 저작의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비록 신청인이 이 사건 책자와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청인의 반론내용 중 이 사건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응하는 부분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보도가 <월간조선>의 보도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반박·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했다.

한편 “경실련 통일협회와 관련하여서는 피신청인이 달리 사실적 주장을 보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며 기각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들은 1997년 9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냈으나(97서울중재 242) 피신청인 한국논단이 보도는 정당하다며 반론을 수용하지 않아 중재불성립결정되자 서울지방법원에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7카기6916 반론보도

신청인 : 1.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25의 1

대표자 이사장 강만길

2. 이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논단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38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우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 <한국논단>의 표지란에 [나는야, 통일 1세대}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44급 고딕체 활자로, 같은 <한국논단>의 차례란에 같은 제목을 28급 고딕체 활자로 각 기재하고, 제100면 상단 부분에 같은 제목을 62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문 본문을 위 월간지의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의 이름을 25급 고딕체 활자로 각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 에게 피신청인이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월간 <한국논단>을 발행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월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 이 의 나머지 신청 및 신청인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의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 <한국논단>의 표지란 중 상단 부분 및 차례란 중 맨 첫 부분에 각 별지 제2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대제목 부분은 특호 고딕체 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2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고, 본문 제100면 이하의 기사란 중 최상단 부분 지면에 별지 제3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대제목 부분은 특호 고딕체 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22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소제목 부분은 20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의 이름은 2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각 가로로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월 금 1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소갑 제1, 2호증,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8호증, 소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가. 신청인 이 는 <어린이를 위한 통일 이야기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책(이하 이 사건 책자라고 한다)의 저자인데, 통일원은 1997. 2.초부터 1997. 5.말까지 4개월 동안 “북한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통일이 된다.” 는 내용의 통일 캠페인과 공익광고를 하면서 그 캠페인과 공익광고 문안에 이 사건 책자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나. <월간조선> 1997년 7월호는 위 책자의 내용과 통일원의 위 캠페인을 소개,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이하 경실련 통일협회라고 한다)는 1997. 8. 1.경 <월간조선>의 위 보도를 비판하고 “건전한 통일논의를 용공으로 몰지 말라.” 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라. 그러자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월간지인 <한국논단> 1997년 9월호의 표지에 28급 고딕체의 활자로 [경실련 통일협회는 답하라] , 44급 변형된 고딕체로 [반박, 도둑이 제 발 저리나] 라고 기재하고, 차례란에는 같은 내용을 20급 명조체와 28급 고딕체로 각 기재한 다음, 본문의 100면부터 106면에 걸쳐 발행인인 신청외 이 의 명의로 된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위 기사에는, 38급 명조체로 [경실련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한다] 는 소제목 아래, 90급 고딕체의 [도둑이 제 발 저리나] 라는 본제목, 그리고 그 아래에 32급 고딕체로 [。용공매도。·。매카시선풍。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라는 부제하에 이 사건 책자의 몇몇 부분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그 저자인 신청인 이 및 위 성명서의 발표자인 신청인 경실련 통일협회에 대하여 언급하였는 바, 그 기사 중 이 사건 책자를 인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신청인들과 직접 관련하여 언급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1) 103면에는 “경실련 간부인 이 교수는 1995년 10월 어린이를 위한 통일 이야기 1. 나는야, 통일 1세대. 라는 175페이지의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은연 중에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남한을 비아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게재하고, 그에 이어서 이 사건 책자의 일부분을 인용한 다음, “이 얼마나 효과적인 북한체제 선전이요, 가공할 남한체제 비판인가?” 라고 게재하고,

(2) 104면에는 이 사건 책자의 일부분을 인용한 다음, “이 교수는 순진한 어린이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는 붕괴된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 2천만명을 죽였다거나 중국 공산당수 모택동이 대약진운동으로 역시 2천만명을 굶겨 죽였고, 김일성 — 김정일의 독재체제가 20여 만명의 반대자를 가두어 놓고 주민의 반수 이상을 적대계층으로 분류하면서 대다수 인민을 굶기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그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만을 공산주의 찬양 바로 다음줄에서 서술하고 있다.” 고 게재하고,

(3) 같은 104면에 다시 이 사건 책자의 일부분을 인용한 다음, “이 교수가 어린이들에게 의도적으로 가르치려 하고 있는 글과는 달리, 현실은, 공산주의가 자유 대신 누구나 빵을

먹지도 못하는 하향평등사회로 몰락했고,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자들이 바라고 선전하는 것처럼 부익부·빈익빈. 하지 않고 저소득 노동자도 해외여행을 하며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는 부익부·부익부.의 사회를 만들었다.”고 게재하고,

(4) 105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산주의 환상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려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는 공산주의 환상 속에서 백일몽을 꾸고 있거나,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의 사주를 받고 남한의 어린이들을 의식화하고 세뇌하려 한다고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고 게재하고,

(5) 같은 105면에 “경실련 통일협회. 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된 성명서는 필자가 지적하는 대목에 대해 [용공시비의 논란대상이 되고 있는 목차는 아이들의 상상력에서 직접 나온 것] 이라면서 이 교수의 집필의도를 가리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 문서는 또 지난 7월 17일자 조선일보 광고란(5면 하단)에 실린 통일대비포럼. (공동대표 :

등) 명의의 통일원 해체하고 통일원장관 물러나라. 제하의 성명에 대해 용공매도. 라고 반박하고 있다. 스스로 용공매도. 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 아무도 그들을 용공. 이라고 매도하지 않았다.”고 게재하고,

(6) 106면에는 이 사건 책자의 일부분을 인용한 다음, “반공·애국자가 대다수인 국민의 혈세 가운데서 자그마치 3억8천만원이나 들여 그 같은 공산주의 찬양서를 통일홍보 캠페인. 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진의는 무엇인가?”라고 게재하고,

(7) 같은 106면에 “경실련 통일협회. 는 어떤 통일을 지향하며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가, 그대들이 협박한 소위 법적대응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 하기 전에 먼저 그 정체를 밝히길 바란다.”고 게재하고,

(8) 같은 106면에 “경실련. 그리고 그 산하의 통일협회. 는 진정 경제정의실천. 만을 위한 활동과 통일을 위한 일만 하는 단체인가, 진정 그렇다면 그 두 기구는 우리를 가리켜 광적으로 매카시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는 성명과 6개 항의 전후 모순 투성이 요구조건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에 불응한다면 그대들은 용공. 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수호세력에 도전하는 친공·친북. 세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으며, 우리는 친공·친북세력이 분쇄·소멸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게재하였다.

마. 그 후 신청인 이 는, 이 사건 책자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신청인들이 이 사건 보도는 허위이거나 이 사건 책자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왜곡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첫째로, 이 사건 보도는 이 사건 책자의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비판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째로, 이 사건 보도는 권위지인 <월간조선>의 보도에 터잡아 그 보도가 진실이라는 확신 아래 사실을 근거로 하여 오로지 공익을 위해 보도한 것이며, 셋째로, 이 사건 보도 후에 신청인 이 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됨으로써 이 사건 보도의 진실성이 증명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신청인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건대,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16조 소정의 반론보도청구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비평이나 평론과 같은 주관적인 의견의 개진에 대하여는 반론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그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명예훼손의 정도에 이를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대립되는 이해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반대의 주장을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앞서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신청인 이 ○○ 와 관련하여 위 1. 라. (1)항 내지 (4)항 설시의 보도내용은 이 사건 책자의 내용과 저자인 위 신청인의 저작의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그러한 보도에 대해 위 신청인에게 해명 또는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주장, 입증에 없는 이상 위 신청인은 일응 위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인 한편, 비록 위 신청인이 이 사건 책자의 저작, 발행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신청인이 위 보도에 대한 반론으로서 내세우는 별지 제3목록 기재의 반론내용 중 위 보도 중 사실적 주장에 대응하는 부분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보도부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신청인들과 관련된 나머지 부분(위 1. 라. (5)항 내지 (8)항 설시부분을 포함)은, 단순히 피신청인 또는 그 발행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비판을 개진한 것에 불과할 뿐 사실적 주장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신청인 경실련 통일협회와 관련하여서는 피신청인이 달리 사실적 주장을 보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들의 반론보도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1. 라. (1)항 내지 (4)항 설시의 보도부분에 대한 신청인 이 ○○ 의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와 신청인 경실련 통일협회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만 일부 이유있다.

나. 다음으로 피신청인의 둘째 주장에 대해 살펴건대, 이 사건 보도가 <월간조선>의 보도내용을 인용한 것이거나 그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신청인 이 ○○ 에게 반박,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나아가 피신청인의 셋째 주장에 대해 살펴건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비록 신청인 이 ○○ 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신청인 이 ○○ 의 위 1. 라. (1)항 내지 (4)항 설시의 보도부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이유있으나, 위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과 신청인 경실련 통일협회의 신청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신청인 이 ○○ 의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및 게재방법

신청인 이 ○○ 의 반론보도의 내용은, 위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위 신청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은 이 사건 보도의 활자크기 및 자수(字數) 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 이 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 및 신청인 경실련 통일협회의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6.

재판장 판사 김 능 환

판사 이 우 재

판사 박 성 수

<별지 제1목록>

^나는야, 통일 1세대}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월간 <한국논단> 1997년 9월호 제100면 이하 [도둑이 제 발 저리나] 라는 제목하에 반론 보도청구인이 지은 책 <어린이를 위한 통일 이야기 ^나는야, 통일 1세대>와 관련하여 보도한 기사(이하 문제 기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문제 기사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통일 이야기 ^나는야 통일 1세대>(천재교육출판사)라는 책자가 은연 중에 북한의 체제를 찬양, 선전하고 남한을 비판, 비아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순진한 어린이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 책자는 크게 어린이가 직접 쓴 ^통일 후 궁금중 제기} 부분과 ^전문가의 코멘트} 부분, 편집진이 쓴 ^북한 이야기} 등의 3부분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는데, 반론보도청구인은 그 중 ^전문가의 코멘트} 부분을 집필하였다.

반론보도청구인이 그 집필 부분에서, 북한에도 좋은 점이 있고 남한에도 나쁜 점이 있다거나 북한의 어린이들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생애에 대해 배운다고 서술한 것은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반론보도청구인이 또한, 그 집필 부분의 곳곳에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려움과 잘못된 점도 있는 그대로 지적하였고, 남북한이 어떤 통일과정을 밟아 나가느냐에 따라 통일 후의 사회가 크게 바뀌지만 남북한의 통일은 평화적인 통일이어야 하며 어떤 체제가 되든 자유, 인권, 사회복지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과 통일 이후에 자본주의체제로 되는 것은 역사의 추세라는 것 및 공산주의 소멸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밝혔다.

반론보도청구인은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남한체제를 비판하거나 어린이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어 줄 의도로 위 책자를 저술한 것이 아니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 제2목록>

대제목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책 <나는야, 통일 1세대>는 건전한 통일교육도서이다.

중제목 : 교수, 북한을 지지한 적 없고 공산주의자 아니다.

반론보도신청인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

반론보도신청인

<별지 제3목록>

대제목 : 한국외국어대학교 李 교수의 책 <나는야, 통일 1세대>는 건전한 통일교육도서이다.

중제목 : 李 교수, 북한을 지지한 적 없고 공산주의자 아니다.

소제목 : 李 교수는 평화통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이론가이다.

본 문 : 1. 주식회사 한국논단이 발행하는 월간 <한국논단> 1997년 9월호는 그 표지 및 차례란 그리고 본문 제100쪽에서부터 제106쪽까지 [경실련 통일협회는 답하라] , [도둑이 제 발 저리나] 라는 제하로 한국외국어대학교 李 교수의 저서인 <나는야, 통일 1세대>(천재교육사, 1995년 10월 발행 ; 이하 ^이 책)이라 함)의 내용이 마치 북한의 노선을 미화한 것처럼, 나아가 이 교수가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사주를 받은 용공분자 내지 친북인사, 공산주의자이고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가 친공·친북세력일 것인 양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북한의 노선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며 건전한 아동용 통일교육도서이고, 李 교수는 평화통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이론가이다.

2. <한국논단>의 기사는 <월간조선> 1997년 7월호에 보도된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 캠페인] , [통일되면 수도와 나라꽃이 바뀌나] 라는 제목의 기사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였고 또 이 책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철저한 왜곡보도이다.

3. 이 책은 위 출판사의 편집자가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선생님께 부탁을 하여 초등학교생들이 통일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글을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크게 어린이가 직접 쓴 ^통일 후 궁금증 제기} 부분과, ^전문가의 코멘트} 부분, 편집진이 쓴 ^북한 이야기} 부분 등의 3부분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는데 신청인 이 는 그 중 ^전문가의 코멘트} 부분을 집필하였다.

4. <한국논단>은 이 책의 내용이 만약 통일이 되면 마치 首都와 나라꽃이 필연적으로 바뀌게 되며 또 신청인 이 의 이 책을 근간하여 만들어진 통일원의 통일 캠페인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하고 있어서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 책은 그 어느 부분에서도 이를 주장하거나 북한의 노선에 따르고 있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실은 이 책의 해당부분을 전문 그대로 읽어 보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왜곡된 보도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서울 신정국민학교 6|5 이 }이 쓴 글임을 밝히면서(14쪽) “우리 민족은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통일이 되면 정말로 바뀔 것이 많다. 나라 이름은 어떻게 바뀔까? 남북이 갈라지기 전의 조선이나 고구려로? 하지만 옛날 이름으로 바뀌면, 연대표에 똑같은 이름이 나타나므로 옛날 나라와 요즘 나라를 구별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나는 김정일이나 북한 주민들의 협조가 있다면,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어색함이 없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냥 썼으면 좋겠다. 국기와 나라꽃도 달라져야 한다. 국기는 흰 바탕에 태극무늬만 넣으면 어떨까? 또 나라꽃으로는 동방의 하얀 꽃이란 뜻으로 동백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애국가는 요즘 유행하는 서태지나 김건모의 랩송으로? 아니면 북한 노래로? 나는 애국가가 은은한 느낌을 주는 가곡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안산 경일국민학교 5|5 권 }가 쓴 글이라고 소개하면서(15쪽)

“우리의 소원대로 통일이 되면 어떨까? 물론 바뀔 것도 많겠지. 나라 이름은 어쩌면 한국 연합국으로 바뀔 것이다. 남한, 북한 모두 ^한}자가 들어 가고, 통일이 되어 합쳐진 민족이니까 나라 이름으로는 한국연합국이 제격이다. 통일이 되면 국기나 나라꽃이 바뀌겠지. 정치가들이 통일세금이란 세금을 거두어 국기와 나라꽃 바꾸기 회의에 쓸 것 같다. 국기는 북한기와 남한기를 복합한 기였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옛 북한과 남한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마찰을 빚는 일이 없을 테니까 말이다. 나라꽃은 아카시아가 가장 좋을 것 같다. 우리 한민족의 청결함과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에 딱 맞는 흰색에다 달콤한 향기까지 있으니까.” 라고 되어 있어 누가 보더라도 위 내용은 신창인 이 의 주장이 아닌 초등학교생들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그 내용 또한 북한의 나라꽃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李 교수는 위와 같은 초등학교생들의 의견에 대하여(16~17쪽) “통일이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바뀔 것이 많겠네요. 나라 이름, 국기, 나라꽃, 애국가뿐만 아니라 국보, 명절, 수도, 지폐에 새길 인물까지도 다시 생각해야 할 거예요. 아마 바뀌는 것을 찾는 것보다 안 바뀌는 것을 찾는 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중략) 여기에서 우리는 남북한이 어떠한 통일 과정을 밟아 나가느냐에 따라 통일 뒤의 사회가 크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식이나 북한식이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어떤 체제가 되든 자유, 인권, 사회복지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라고 기술하였다.

5. 또 <한국논단>은 이 책이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

반대로 이 책에서 李 교수는 남북한의 통일은 평화적인 통일이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으며(154쪽), 또 통일 이후의 체제는 자유·인권·사회복지를 귀중히 여기는 체제이어야 하며(17쪽), 그 외에도 “공산주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 이고(23쪽), “통일이 되면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은 명절에서 빠지게” 될 것이며(83쪽),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김일성 집안을 중심으로…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 등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역사를 왜곡시킨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고쳐질 것이다.” (130~131쪽)라는 등으로 기술하였는 바, 이 점만 보더라도 <한국논단>의 보도가 이 책을 얼마나 왜곡했는지를 알 수 있다.

6. <한국논단>은 이 책 내용 중 “북한 사람들은 애국가보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라는 설명부분을 문제삼아 마치 李 교수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사람인 양, 이 책이 공산주의 찬양서인 양 보도하였으나 이 또한 대표적인 왜곡보도다.

이 책은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데 그 1차적인 태도가 있으며 실제 북한에서는 ^김일성 장군}노래가 북한의 ^애국가}보다 더 불리우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은 학생들에게 오히려 북한이 얼마나 1인 독재체제인가(^애국가}가 아닌 ^개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신창인 이 는 이 책에서 “대신… 김일성 장군의 노래는 평소 작은 행사 때라도 반드시 부릅니다. 곡도 탁아소와 유치원 때 이미 배우지요.” 라고 기술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책에서 북한의 초등학교생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 시절}을 일주일에 한 시간씩 배운다고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은(18쪽), 북한이 얼마나 1인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이 책을 읽은 초등학교생들은 위 글이 북한의 1인 세습독재체제를 알려주는 대

표적 실례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위 노래를 비롯한 북한의 ^애창곡}들은 KBS-TV, MBC-TV 등에서 그대로(자막까지 붙여서) 방송되고 있는데 이를 시청한 모든 국민들은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위 방송의 내용이 북한을 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노래에서 독재체제와 1인숭배, 그리고 사회주의적 음악의 비예술성을 느낄 뿐이듯이 이 책의 위 부분도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7. <한국논단>은 이 책 내용 중 ^민주주의가 될까 공산주의가 될까}라는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이 “공산주의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심어 주고 있다.”면서, 마치李 教授가 공산주의자로서 의도적으로 공산주의의 폐해를 숨기고 자본주의의 모순만을 강조하고 있는 듯이 보도하였으나, 이는 왜곡의 정도를 넘어 ^날조}에 가깝다.

李 教授는 이 책에서(22~23쪽) “그러나 오랫동안 자본주의 나라들과 힘을 겨루던 사회주의 나라들은 지금은 거의 무너졌답니다. 몇 년 전부터 소련과 동독을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 나라들이 자본주의로 바뀌었지요.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직장과 집을 정부가 다 구해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대충대충 하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노력하면 그만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는 결국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골고루 잘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도 통일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로 되는 것은 처음엔 어려움이 좀 있을지 몰라도 역사의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술하였다. 이처럼李 教授는 이 책에서 공산주의가 소멸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그 도입부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도 <한국논단>은 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일부 내용을 악의적으로 해석하여李 教授를 공산주의자인 양 단정하였으나 이는 허위보도이다.

8. <한국논단>은 이 사건 기사에서 “그(李 教授)는 공산주의 환상 속에서 백일몽을 꾸고 있거나,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의 사주를 받고 남한의 어린이들을 의식화하고 세뇌하려 한다고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 고 보도하였으나,李 教授는 북한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일도 없거니와 이 책의 내용도 결코 북한을 미화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책은 이 책의 곳곳에서 북한에 ^암시장}이 존재하고 쓰레기 소각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는 기관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계곡에 함부로 버려 북한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점(36쪽), 기차의 상습적인 연착과 기차 안에서 소매치기의 활개(66쪽), 양력설에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동상을 참배하고 김정일의 새해연설을 강제로 들어야 하는 일(84쪽), 북한은 여행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는 것(96쪽), TV의 절대적 부족(120쪽), 청바지가 한 달 월급의 5배나 될 정도로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점(90쪽), 김일성 집안 중심으로 역사를 왜곡한 점(150, 151쪽),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미래는 신라의 경순왕의 경우처럼 대한민국에 귀순하든가 아니면 동독의 호네커의 경우처럼 망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155쪽), 의료시설과 약의 부족으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156쪽) 등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어려움과 잘못된 점도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있다.

李 教授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 주도하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의 평화적 통일을 상정하여 “어떠한 체제가 되든 자유·인권·사회복지가 귀중히 여겨져야 한다.” 라고 밝혔다.

9. 이 책의 내용이 모범적인 아동용 통일교육도서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통일원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의 답변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책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다.

10. 출판사에서는 당초 이 책을 기획할 때 그 목차부분을 안기부 산하 내외통신에 자료를 요청하여 협조를 받았으며,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는 안기부(5부)와 전(全)언론기관, 관계기관에 책을 보냈고, 이를 받아 본 ^조선일보)에는 신간 서적으로 소개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대통령자문기구로서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관지인 ^민주평통}에도 이 책이 크게 소개되는 등 지난 2년 동안 좋은 통일교육도서라고 호평을 받았다.

11.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는 건전한 통일운동단체이며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결코 친공·친북세력이 아니다.

반론보도신청인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

반론보도신청인

□

。

신청인이 주사파이며,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적 주장을 공표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반론보도를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1998. 4. 10.자 판결 (98카기2094)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주홍 부장판사)는 1998년 4월 10일 한국방송공사 남

PD가 월간 <한국논단> 1998년 3월호 [빨갱이는 썸으로, 경찰은 똘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한국논단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심판소송에서 월간 <한국논단>은 신청인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신청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관한 논평으로 보기 힘들고 오히려 그 제작의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신청인에게 해명 또는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은 위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론보도하라.” 고 판결했다.

피신청인이 월간 <한국논단> 3월호에 신청인이 주사파로서 ^다큐멘터리 극장}을 통해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신청을 하였고(98서울중재28), 중재불성립결정되자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남 PD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判 決 文

사 건 : 98카기2094 반론보도청구심판

신청인 : 남

성남시

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논단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38

대표이사 이

변론종결 : 1998. 3. 27.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 <한국논단>의 본문 96면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본문 크기 고딕체 활자로, 그 내용은 본문 활자로, 신청인 이름은 본문 크기 고딕체 활자로 각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 <한국논단>을 발행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월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 <한국논단>의 표지란 중 상단 부분 및 차례란 중 맨 첫 부분에 각 별지 제2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특호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각 게재하고, 본문의 제92면 이하의 기사란 중 최상단 부분 지면에 별지 제3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특호 고딕체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이름은 2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제1항 기재의 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 위 기간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월 금 1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1984년 한국방송공사(KBS)에 입사한 이래 1993. 5.부터 1994.까지 총 68회에 걸쳐 방영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극장}의 책임프로듀서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한국방송공사의 책임프로듀서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월간지 <한국논단>을 제작,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이 이 작성한 [빨갱이는 좋, 경찰은 惡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 라는 제하의 기사를 위 <한국논단> 1998년 3월호(통권 제103호 — 이하 ^이 사건 월간지)라고만 한다)의 92면부터 98면까지 사이에 게재하였는데, 그 가운데 신청인이 주사파(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여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약칭하는 말로 사용된다)로서 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극장}을 통해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별지 제4목록 기재 기사부분(이하 ^이 사건 기사부분)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발행한 이 사건 월간지에 공표된 이 사건 기사부분은 신청인이 제작한 위 프로그램에 관한 논평으로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그 제작의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그러한 보도에 대해 신청인에게 해명 또는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은 일응 위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인 한편, ^신청인이 주사파가 아니고, 위 프로그램을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제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청인의 반론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부분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에서 이 사건 월간지의 위 제하의 기사 전체가 신청인에 관한 사실적 주장으로서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월간지의 위 제하의 기사 중 이 사건 기사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위 한국방송공사 자체 혹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일 뿐 신청인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사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론보도의 내용 및 게재방법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은, 신청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반론보도문의 게재방법은 이 사건 기사부분의 위치, 활자크기 및 자수(字數) 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의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10.

재판장 판사 이 주 홍

판사 박 성 수

판사 곽 병 훈

<별지 제1목록>

제목 : “KBS 남 프로듀서에 대한 이른바 주사파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본문 : 월간 <한국논단>은 1998년 3월호(통권 103호)의 본문 92면에서 98면에 걸쳐 “빨갱이는善, 경찰은惡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라는 제하의 기사를 이 의 기명으로 게재하면서 KBS 남 프로듀서를 주사파인 양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남 프로듀서는 주사파가 아니고, 책임프로듀서로 편성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극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사대주의자로,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미화한 사실이 없으며, 동학농민혁명을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분석하거나 대구10·1폭동을 인민항쟁으로 미화한 사실도 없고, 제주4·3사태는 아예 다루어 본 적도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남

<별지 제2목록>

KBS 남 PD, 주사파 아니며 친북활동한 적 없다.

<별지 제3목록>

제목 : KBS 남 PD에 대한 이른바 주사파 관련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본문 : 월간 <한국논단>은 1998년 3월호(통권 103호)의 표지 및 차례, 본문 92쪽에서 98쪽에 걸쳐 각 [빨갱이는 善, 경찰은 惡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 라는 제하의 기사를 이명인의 기명으로 게재하면서 KBS PD를 주사파인 양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남 PD는 주사파가 아니며 북한으로부터 모종의 지시를 받거나 북한과 접촉을 하거나 북한을 찬양, 고무하거나 그외 어떠한 형태로든 친북활동을 벌인 사실이 없다.

남 PD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등과 관련하여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북한의 선전도구로 이용된 사실도 없다.

또한 남 PD가 책임프로듀서로 일한 ^다큐멘터리 극장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사대주의자로,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미화한 사실이 없으며 또 동학농민혁명을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분석하거나 대구 10·1 폭동을 인민항쟁으로 미화한 사실도 없으며 제주 4·3 사태는 아예 다루어 본 적도 없다.

남 PD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거나 또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남 PD나 KBS는 ^다큐멘터리 극장 프로그램에서 빨갱이는 善으로, 경찰은 惡으로 연출하여 방송한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별지 제4목록>

1. 제목 “주사파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공영 방송” 부분.

2. 그 아래 본문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늘 정반대로 왜곡하여 이승만을 사대주의자로,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미화하는, 말도 되지 않는 저질의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내보냈다. 한때 1TV의 다큐멘터리 극장을 통해 시청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것이 당시 이 프로를 연출했던 남 (南) PD의 자의적 해석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주사파이다. 또 남 PD는 이 프로를 통해 동학란을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분석하기로 했고, 해방 후의 대구 10·1 폭동, 제주 4·3 폭동 등 남로당이 주도한 폭동들을 인민항쟁으로 미화시켰다.” 는 부분.

3. 그 아래 본문 중 “이 같은 배경에는 ^수령에 대한 불경죄를 염려한 주사파들의 배려도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는 부분.□

신문사 본사와 지국의 법인격 관계여부는 보도로 인한

피해 여부와 아무 관련이 없고 보도내용이

신청인 신문사에 관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인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실익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8. 5. 22.자 판결 (97카기9241)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주홍 부장판사)는 1998년 5월 22일 중앙일보사가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미디어오늘의 보도내용은 신청인 회사에 관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해명 또는 반박할 기회를 부여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며 피신청인 미디어오늘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피신청인 미디어오늘은 “보도내용 중 삭제를 요청했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신청인 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 회사의 지국의 영업에 관련된 내용이고 신청인 회사의 각 지국은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체들이므로 지국의 영업활동에 관한 보도에 의하여 신청인 회사가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없어 신청인 회사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문사의 본사와 각 지국의 법인격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아무런 논리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파지문제에 관하여 신청인 회사가 관여하고 있다는 강한 암시를 주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보도가 진실에 부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신청인에게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미디어오늘>은 1997년 11월 12일자를 통해 “대구지역의 중앙일보 지국을 운영하던 사람이 PC통신에 [재별신문의 부패] 라는 제목으로 중앙일보 지국에서 많은 파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는데, 이 글은 며칠 후 중앙일보의 요청에 따라 삭제되었다고 전하면서 이 사람이 중앙일보 모 지국의 경우 발송부수 3,000부 중 2,000부가 버려진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중앙일보는 사실과 다르다며 1997년 11월 2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했지만(97서울중재264, 265)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불성립결정되었고,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중재결정을 내렸으나 미디어오늘측이 이의신청하여 이루어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7카기9241반론보도

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석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준, 최종현, 이준원, 이종무

피신청인 :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58의 14

대표이사 이형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

간신문 <미디어오늘>의 본문 제11면 우측 상단에 [‘어느 판매지국장의 고백|3천부 중 2천부가 파지’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30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목록 게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문 본문을 위 주간지의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의 이름을 16급 명조체 활자로 각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을 발행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신문 <미디어오늘> 제11면 우측 상단에 세로 14센티미터, 가로 25센티미터 크기의 가로쓰기 상자기사로, 그 상부에는 [‘어느 판매지국장의 고백|3천부 중 2천부가 파지’ 기사에 대한 반론문] 이라는 제목을 30급 고딕체 활자로 2줄에 걸쳐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반론보도문 및 반론보도 신청인을 16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 익일로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 2호증,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소갑 제4 내지 8호증(단, 소갑 제1, 7, 8호증을 제외한 나머지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성립 인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소을 제3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신청인 회사는 일간신문 중앙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신청인 회사는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을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주간신문 <미디어오늘> 1997년 11월 12일자 제11면에 본문 활자의 약 2배 크기의 활자로 [어느 판매지국장의 고백] 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 아래에는 본문 활자의 약 4배 크기의 활자로 [3천부 중 2천부가 파지] 라는 제목을 달아 아래와 같은 요지의 기사를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보도의 요지

“최근까지 중앙일보 대구 성당동지국을 운영해 온 한 는 1997. 10. 21. PC통신 천리안에 ‘재벌신문의 부패’ 라는 제목으로 ‘중앙일보 지국에서 많은 파지가 발생하고 있다’ 는 내용의 글을 띄웠는데, 이 글은 며칠 뒤 중앙일보의 요청에 따라 삭제되었다.”

“한 가 운영해 온 성당동지국의 경우 하루 1,500부의 신문이 발송되는데, 그 중 정기구독자에게 배달되는 800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파지로 버려지고 있다.”, “버려지는 파지값은 한 달에 대략 20만원 내지 30만원이다.”, “한 는 중앙일보 모지국의 경우 발송부수 3,000부 가운데 2,000부가 파지로 버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지국에서는 발송부수 가운데 최소한 3분의 1 이상을 파지로 버린다.”, “중앙일보는 본사유가부수의 지국유가부수를 따로 산정하고 있다.”

라. 이에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의 정정을 요구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미디어오늘> 1997. 11. 19. 제2면에 “121호 11면 ‘어느 판매지국장의 고백’ 기사 내용 중 성당동지국은 서대구지국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라는 내용의 정

정보도문만을 게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신청인 회사와 관련한 위 1.의 다.항 설시의 보도내용은 신청인 회사에 관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그러한 보도에 대해 신청인에게 해명 또는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주장, 입증 이 없는 이상 신청인은 일응 위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보도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먼저,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내용 중 신청인 회사 PC 통신에 올린 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 바 없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신청인 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 회사의 지국의 영업에 관련된 내용이고, 신청인 회사의 각 지국들은 모두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체들로서 신청인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신문을 공급받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신청인 회사의 지국들의 영업활동 내용에 관한 보도에 의하여 신청인 회사가 피해를 보았다고는 할 수 없어 신청인 회사는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다룬다.

그러나, 신문사의 본사와 각 지국의 법인격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아무런 논리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는 위 파지 문제에 관하여 신청인 회사 스스로가 관여하고 있다는 강한 암시를 주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신청인은 또한, 이 사건 보도는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전 입증으로도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신청인 회사의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및 게재방법

신청인 회사의 반론보도의 내용은, 위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신청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은 이 사건 보도의 활자크기 및 자수(字數) 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5. 22.

재판장 판사 이 주 홍

판사 박 성 수

판사 곽 병 훈

반론보도문

<미디어오늘>은 1997년 11월 12일자 제11면에 [어느 지국장의 고백, 3천부 중 2천부가 파지]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PC통신에 게재된 전 중앙일보 서대구지국장의 글을 인용하여 “중앙일보사가 지국으로 보내는 신문 중 대부분이 파지로 버려지고 있으며, 이 글은 며칠 뒤 중앙일보의 요청에 따라 삭제되었다.” 는 요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중앙일보 서대구지국의 경우 1997년 9월말 현재 하루 신문 발송부수는 1,400부이고 이 중 유가부수는 1,164부이며, 나머지 236부도 상당부분 대비지로 쓰이고 있는 것이므로 파지는 극소수이다. 위 기사 내용과 같이 본사에서 받은 신문의 많은 부분을 파지로 버리는 사례는 중앙일보의 사례가 아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PC통신에 올려진 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한 바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중앙일보사

□

。

반박할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7. 16.자 판결 (98카합3568)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998년 7월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 김 , 배 씨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소송에서 문화방송은 반론보도를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피청구인인 문화방송측은 이 사건보도가 나간 후인 4월 26일자 。 시사매거진 2580. 을 통해 이미 청구인의 반박주장을 보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으며, 청구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에는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반론보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보도에 청구인의 반대주장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그 반대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며 문화방송에게 반론보도를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청구인 김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나 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는 김 목사가 대표자로 있는 종교단체나 교회일 뿐이며 청구인 배 는 김 목사의 처로 이 사건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며 기각했다.

문화방송이 1998년 4월 5일 시사고발프로그램인 。 시사매거진 2580. 에서 [길 잃은 목자] 라는 제하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의 담임목사이자 기독교텔레비전의 공동대표이

사이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인 김 목사를 돈과 명예, 여자문제와 관련하여 잡음을 일으키고 거짓을 말하는 성직자라고 표현하고 김 목사의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시 금품을 살포하였고, 금란교회의 여자 성도와도 불륜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왔다는 등의 보도를 하자 신청인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98서울중재57, 58), 중재결과 불성립결정되자 법원에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신청인들은 문화방송이 1998년 4월 26일에도 。 시사매거진 2580. 을 통해 [길 잃은 목자 그 후] 라는 제하로 김 목사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하자 4월 29일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으나(98서울중재66) 불성립결정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 반론보도 판결을 받았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 1998년 7월 16일자 판결 98카합3641).

判 決 文

사 건 : 98카합3568 반론보도심판청구

청구인 :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의 46 한국기독교회관 706호

대표자 대표회장

2.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의 25 정우빌딩 11층

대표자 감독회장

3. 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

서울 중랑구 망우동 340의 1

대표자 당회장

4. 김

청구인 3.과 같은 곳

5. 배

청구인 3.과 같은 곳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청구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文化放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득렬

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최재경, 박정택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차기환

변론종결 : 1998. 6. 18.

주 문 : 1. 피청구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도래하는 일요일까지,

가. 。MBC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끝부분에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 반론보도 안내문을 낭독하게 하고,

나.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텔레비전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2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청구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 김 위 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청구인 김 의 나머지 청구 및 청구인 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

한감리회 금란교회, 배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1. 피청구인은 이 판결을 선고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MBC 9시 뉴스데스크 。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화면에는 [반론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가운데 중간 부분에는 두 줄로 “금란교회 김 목사, 비리나 부정없다.” 라는 문장을 계속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크기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3 반론보도안내요구문을,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 줄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 김 목사의 반론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4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크기로) 진행자로 하여금 위 반론보도문을, 각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청구인이 제1항을 각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각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각 이행완료시까지 각 청구인들에게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매일 금 100,000,000원의,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매주 금 500,000,000원씩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 김 는 1971년부터는 청구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이하 금란교회라고만 한다)의 담임목사, 1996. 10. 31.부터는 청구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1997. 11. 20. 부터는 청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으로 각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그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인 배 는 위 김 의 처이고, 한편 피청구인은 방송매체를 운영하면서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5. 21:00부터 21:40까지 방송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MBC 9시 뉴스데스크. 의 끝부분에서 “오늘밤 방송되는 시사매거진 2580은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 지도급 목사의 비리를 고발” 한다는 예고방송을 하였고, 곧 이어서 21:40부터는 시사고발프로그램인 。 시사매거진 2580. 에서 [길 잃은 목자] 라는 제목으로 위에서 예고한 바와 같은 내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의 첫머리에 “돈과 명예 그리고 여자문제와 관련하여 잡음을 일으키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성직자”가 있다고 전제한 후, 바로 그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의 담임목사이고 기독교 텔레비전의 공동대표이사이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인 청구인 김 이고 그 주변에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도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방송에서 먼저 위 김 의 재산문제에 관하여, 위 김 에게는 자신의 소유명으로 되어 있는 집이 모두 다섯 채나 되는데, “한 채는 시가 10억원에 달하는 대지 130평 건평 100평의 목사관” 이고, “지난해 8월에는 한강이 눈에 보이는 70평짜리 고급빌라(서울 광진구 빌라로서 그 전경을 보도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하였다. 이하 빌라라고 한다)로 이사를 했다.” 고 하면서 빌라의 구입경위에 관하여 “김 목사가 먼저 집을 사놓고 나중에 (교회의) 사후 동의를 얻었다.” 는 제보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더욱이 위 김 가 피신청인 소속의 취재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위 부동산을 금란교회에 바쳤다고 공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어제(1998. 4. 4.)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등기부상으로는 아직도 김 목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 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며, 그 밖에도 위 김 는 중랑구 망우동에 아파트 두 채와 연립주택 한 채를 더 소유하고 있는 것

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로써 김 목사 명의로 등기된 다섯 채의 집이 모두 김 목사 개인재산이고 그의 재산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라. 이어서 피청구인은 위 김 의 부정선거문제와 관하여, 위 김 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1994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엄청난 돈을 뿌렸다고 전제한 다음, “가방에 돈을 넣고 돌렸는데, 장로들에게는 50만원씩, 목사들에게는 1백만원씩 주었다.” 는 등의 내용으로 된 제보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신성한 종교계에서 정치관보다 더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마.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위 김 의 여자문제에 관하여, “김 목사는 여자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라고 전제한 다음, 김 목사는 지난 10년 동안 약 3억원을 갈취당하였다는 이유로 배모 여인을 고소하여 그에 따라 그 여인이 현재 성동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으나, 금란교회의 성도이었던 그녀와 위 김 의 관계가 보통이 아니었는데, “북악파크호텔 커피숍에서 보자고 하여 나갔는데 (김 목사가) 잠시 룸에 들어가서 애기하자고 하여 룸에 들어가서...”, “1977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일주일에 한번은 만났다.” 는 배모 여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김 목사가 주일예배에서는 배모 여인과 밀회를 가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기자와 만나서는 단 둘이 있었던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때 1975년 또는 76년경 배모 여인의 유혹으로 여관방에 들어갔으나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실이 있다는 김 목사의 주장을 방영하였다).

바. 그리고 나서 김 목사가 이와 관련하여 석연치 못한 행동을 거듭했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한 다음, 1997년 11월경 금란교회 장로들이 (배 여인과의 불륜관계를 인정하는) 김 목사의 고백을 들었으나, 그 자리에 모였던 장로들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도록 강요받았으며, 그 후 지난해 말 김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의 총회실 행위위원회에서 배 여인을 그의 처제 내지 처 사촌동생이라고 해명한 일이 있으나 호적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또한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김 목사가 3억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을 지난 10년 동안 배모 여인에게 주었으며(다만 이어서 김 목사측이 공갈 협박 때문에 돈을 준 것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배모 여인이 구속되었다는 주장을 방영하였다), 그 밖에 지난해에 배 여인이 아파트를 살 때에도 7천만원을 지원하였다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위 김 가 위 배 여인과 불륜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왔고 그 때문에 돈을 준 것처럼 인상을 주고 있다.

사. 위 방송은 계속하여, 이처럼 김 목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자, 감리재단 내 원로들이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네 차례나 (총회실행위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김 목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고, 그 밖에 감리교 감독회장 취임 이후 감리교본부 사무국장을 불법 해임한 뒤 이 때문에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1심에는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라고 보도한 후, 끝부분에서 기독교계의 대표 목사가 소송과 분쟁으로 영일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2. 청구인 김 의 이 사건 청구원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방송한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적 주장으로 말미암아 청구인 김 는 명예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반론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장하는 사실 중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별지 제1과 같은 반론보도의 예고방송 및 별지 제2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방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보도 및 그 후에 방송된 1998. 4. 26.자 。 시사매거진 2580. 에서 이미 위 청구인의 반박주장을 보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내용 중에 위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 내용과 취지, 보도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 중에 나타난 위 청구인의 반대주장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또 이 사건 보도 이후에 방영된 프로그램에서 위 청구인의 반대주장이 보도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 자체에 대한 반론권을 행사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인으로서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다만 위 보도에 청구인측의 반박주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반론보도문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기로 한다).

또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반론보도요구문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보도의 내용 중에 “주택 다섯 채를 위 김 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피청구인 방송사 소속 기자들의 취재 이후 비로소 취재에 대비하여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금관교회에게 이전한 점”, “1994년 및 1996년도에 실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많은 금품을 살포한 점” 및 “신청외 배 로부터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그녀에게 10여 년간 3억5천만원을 지급하여 준 점” 등은 명백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론보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그 반대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당원이 인정한 별지 제2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다만 위 보도 중에는 사실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고 이 점은 청구인측도 시인하는 바이지만,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게 된 동거나 맥락으로 보아 그 보도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이고 반박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구하는 반론보도요구문에는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반론보도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청구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당원이 인정한 별지 제2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이거나 권리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배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그 한도 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한편 청구인 김 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보도내용 중에서 위 청구인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에 취임한 이후 감리교본부 사무국장을 불법해임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 청구인이 감리교본부 사무국장을 해임한 것은 위 청구인의 감독회장 취임 이전에 있었던 장정해석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된 것일 뿐, 사무국장이 위 신청인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보복적으로 인사조치한 것은 아니다.” 는 주장을 반론보도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위 청구인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에 취임한 이후 감리교본부 사무국장을 해임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방송내용 중에 해임의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보복해임이라는 것은 언급조차 없다), 그 해임

이 불법인지 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평가적 의견일 뿐이고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그 밖에 위 청구인은, 별지 제4의 반론보도요구문 제17, 18항 기재와 같은 내용(방송의 종교탄압이고 무책임한 폭로이며, 방송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요구하는 부분)도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하여 구하고 있으나, 위 청구인이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3. 청구인 김 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하 나머지 청구인들이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나머지 청구인들도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그들의 법익을 침해당하였음을 전제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김 와 같은 내용으로 반론보도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도내용은 주로 위 김 개인의 비리나 부정에 관한 것이고 청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나 기독교대한감리회 및 그 소속의 금란교회는 위 김 가 대표자로 있는 종교단체나 교회일 뿐이고 청구인 배 는 위 김 의 처로서 이 사건 보도내용은 위 단체나 배 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단체의 대표자인 개인 혹은 남편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실적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단체나 부인의 법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그들의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인들의 반론보도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김 를 위하여 그 권리범위 내에서 당원이 인정하는 별지 제1(반론보도안내문), 2(반론보도문)의 내용을 당원이 정한 기한 내에 같은 시간대의 같은 프로그램에서 방송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 반론보도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위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는 바, 청구인 김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위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16.

재판장 판사 김 대 회

판사 유 헌 중

판사 고 창 후

<별지 제1> 반론보도안내문

오늘 방송되는 。 시사매거진 2580. 에서는 지난 4월 5일에 방송된 [길 잃은 목자] 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의 담임목사 김 의 반론보도를 방송합니다. 끝.

<별지 제2> 반론보도문

문화방송은 1998년 4월 5일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길 잃은 목자] 라는 제목

하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 담임목사인 김 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 목사는 어떠한 비리나 부정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반론보도판결에 의하여 그 주장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우선 재산문제에 관하여 김 목사가 다섯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축재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김 목사는 서울 대지 및 지상 2층의 목사관으로 사용되는 주택 1동은 1994년 초 김 목사가 금란교회 건축헌금으로 헌납하였으나 등기부상으로만 김 목사 명의로 남아 있다가 1998년 3월 30일 금란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서울 빌라 401호는 70평짜리 호화빌라가 아니며 원래 김 목사의 환갑을 기념하기 위하여 금란교회의 장로들의 결의로 5억원에 구입하여 김 목사에게 증여한 것인데, 김 목사는 그 빌라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금란교회에 반환하였고 그에 따라 1998년 4월 1일 금란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란교회의 담임목사인 김 목사는 교회의 관행에 따라 교회재산으로서 현재 부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 중인 서울 중랑구 , 같은 동 178의 84 , 같은 동 226, 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8년 4월 9일과 16일에 금란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주택도 모두 교회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김 목사가 1994년도에 실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의 감독선거와 1996년도에 실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두 차례에 걸쳐 투표권을 가진 목사와 장로들에게 엄청난 돈을 뿌려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김 목사는 위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금품을 전혀 살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김 목사가 배모 여인과 불륜관계를 맺는 등 여자문제에 관하여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김 목사는 배모 여인과 불륜관계를 맺지 않았고 금란교회 장로들에게 배모 여인과의 불륜관계를 고백한 적도 전혀 없으며, 금란교회 장로들에게 김 목사로부터 그러한 고백을 들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에 날인을 강요하거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배모 여인을 자신의 처제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그녀가 사촌 동생이나 다름없이 처제처럼 대해준 여자라고만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 목사는 1986년경부터 10여 년 동안 배모 여인에게 약 3억5천만원 상당의 돈을 준 것은 김 목사와 부인이 그녀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갈취당한 것이고 그녀는 김 목사의 처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현재 공갈죄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 그 밖에 김 목사는 감리교 교단 내 원로들이 요청한 회의소집을 4차례나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김 목사측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반론보도판결에 의하여 1998년 4월 5일자 시사매거진 2580. 의 ^길 잃은 목자} 프로그램에 대한 김 목사의 반론내용을 방송해 드린 것입니다.1) 끝.

1) ① 본 반론보도문의 문장을 방송에 적당하게 변경시킬 수는 있으나, 그 취지를 곡해하거나 내용이나 길이를 줄여서는 아니된다.

② 본 방송의 배경화면은 없어도 되지만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의 자막은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길 잃은 목자]의 방영테이프 중에서 보도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정지화면이나 동작화면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며, 단 화면없이 자막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반론내용의 요지를 나타낼 것이고, 원방송내용의 요지와 대비하는 경우에는 반론내용이 더 큰 활자로 처리되어야 한다.

<별지 제3> 반론보도안내요구문

이번 주 일요일 밤에 방송되는 。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인 금란교회 김목사는 사실 확인결과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도덕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방영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끝.

<별지 제4> 반론보도요구문

1. MBC-TV는 1998년 4월 5일 저녁 9시 40분부터 방영한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자 금란교회 담임목사인 김 목사에 대하여, 김 목사가 개인적으로 5채의 주택을 소유하여 축재하였으며, 1996년에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시 많은 금품을 뿌렸고, 배모 여자와 불륜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위 방송은 종교지도자를 근거없이 비방하고 매도해 온 자들이 제공한 신빙성이 없는 자료들에 근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십수년간 갇은 공갈을 일삼아 수억원을 갈취한 패륜 여자의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은 김 목사가 등기부상 밝혀진 것만 해도 5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 축재를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김 목사가 이를 부인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된 내용입니다.

교회나 사찰 소유의 부동산 중 사택 등에 대하여 등기할 경우 교회나 사찰 자체의 명의로 등기하기보다는 교회나 사찰의 대표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금란교회의 경우도 예배당이나 교육관 등 대부분의 교회재산은 모두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과 금란교회의 명의로 등기한 반면 금란교회에는 담임목사 이외에도 부담임목사가 13명이나 되어 이들에게 교회 명의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담임목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등을 사택으로 제공하여 왔는데 。 2580. 프로그램에서 지적한 김 목사가 소유하고 있다는 서울 중랑구 및 같은 동 226,

파트 2채와 서울 소재 연립주택 1채도 부목사 사택용으로 매수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금란교회의 부목사들인 의 사택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며, 김 목사가 이를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거니와 개인적으로 축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위 프로그램은 마치 김 목사가 부당한 축재나 부동산 투기를 한 탐욕스런 성직자로 묘사하여 김 목사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3. 서울 중랑구 , 같은 동 소재 목사관은 원래 1985년 4월 금란교회의 기획위원회에서 금란교회의 교세가 날로 확장되어가는데도 당시 김 목사의 가족들이 교회 소유인 낡은 사택에서 살고 있는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신청인 김 의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드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 목사는 낡은 사택을 헐고 그 자리에 현재의 사택을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란교회가 1994년 초 당시의 성전 자리에 새성전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자 김 목사는 위 사택을 교회 건축헌금으로 제공하겠다고 공언하여 그 원매자를 물색하였으나 위 사택이 망우동 일대에서는 큰 주택에 속해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에 김 목사는 교회신도들 중 재력가들에게 위 주택을 사줄 수 없겠느냐고 권유도 해 보았으나 그들도 위 사택이 교회에 인접해 있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사시는 곳인데 평신도가 감히 차지할 수 있겠느냐며 난색을 표하므로 결국 건축업을 하는 금란교회의 이 장로에게 맡겨 위 사택을 헐고 그 자리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였고, 분양시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교회 건축헌금으로 내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당초 1996년경 완공된다던 위 새성전이 계속 미루어지므로 위 사택의 소유명의도 계속 김 목사의 명의로 남게 된 것인데 지난 3월 중순경부터 위 목사관마저도 금란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아 3월 30일 등기절차를 마쳤습니다.

김 목사의 사택은 금란교회에서 불과 버스 한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4. 서울 광진구 빌라 401호는 1997년 6월 성전이 곧 완공되면 김 목사가 살던 사택을 비워주어야 하므로 성전입당 기념 김 목사의 환갑을 기념하기 위해 금란교회의 장로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금 5억원에 구입한 것인데 위 성전의 준공이 계속 지연된 관계로 김 목사나 가족들이 실제 위 빌라에 이사를 하거나 또는 그곳에서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연세빌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찍혀있는 김 목사의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니라 금란교회 사무국에서 일상적인 교무처리를 위하여 사용·보관해 온 한글목도장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연세빌라는 금란교회의 사무국에서 계약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김 목사는 위 연세빌라를 먼저 구입한 뒤 나중에 금란교회로부터 추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김 목사는 1997년 11월 말경부터 김 목사가 12억원이 넘는 호화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느니, 이태리제 호화가구 2억원 어치나 들여놓고 아방궁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느니, 김 목사 일가족이 5대의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있다는 등의 흑색선전물·괴유인물들이 금란교회는 물론이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므로 이에 대한 방어적인 차원에서 1998년 2월 대예배의 설교시간에 그것이 사실무근의 흑색·비방선전물임을 밝혔는데도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은 마치 김 목사가 설교시간에까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방송을 하였으나 김 목사는 12억원이 넘는 호화빌라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이태리제 호화가구를 2억원 어치나 들여다 놓았다거나 5대의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6. 김 목사는 위와 같은 흑색선전물이 나돌자 금란교회의 장로들에게 위 빌라를 금란교회에 돌려줄테니 빨리 처리하라고 요청하였는데도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닌 것인 양 보도하였습니다.

7. 무엇보다도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은 명명백백한 사실을 왜곡방영하였습니다. 즉, 김 목사는 윤 기자와 한일전 축구시합이 벌어진 1998. 4. 1. 취재요청을 받고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 이전인 1998. 3. 중순경 김 목사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금란교회의 소유이므로 이를 모두 신청인 금란교회 명의로 옮기라고 신청인 금란교회의 사무국에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 금란교회 사무국에서는 1998. 3. 20. 관할 망우동사무소에서 신청인 김 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다음 그 다음날인 3. 21. 관할 중랑구청에 택지취득허

가신청을 하여 3. 25. 관할구청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위 사택에 대하여는 1998. 3.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30.에, 위 연세빌라에 대하여는 1998. 3. 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4. 1.에(구청에서 계약서 검인은 1998. 3. 31.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2채의 아파트 및 1채의 연립주택도 1998. 4.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으므로 김 목사는 1998. 4. 1. 윤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위 사택에 대하여는 “내가 교회 앞에서 다 선포를 하고, 후에 등록했지만 지금 교회꺼로 돼 있다.” 고 대답하였고, 이를 못 믿어하는 윤 기자가 “그 금란교회요?” 라고 반문하자, 김 목사는 재차 “아, 그럼요. 교회꺼로 다 이미 등록을 했고” 라고 자신있게 말하였으며 또 위 연세빌라에 대하여도 “그래 요새와서 등기부 이제 내일이라도 조사해 보세요. 다 교회꺼로 돼 있어요.” 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도 윤 기자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취재팀이 어제(1998. 4. 4.을 의미) 확인한 결과 등기부상에는 아직도 김 목사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유난히 강조하여 방영하였으나 이는 모두 허위의 방송인 것입니다.

8.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은 김 목사가 감독회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1994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투표권을 가진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엄청난 돈을 뿌렸고 금년 10월에 있는 감독선거에서도 돈을 쓰지 않으면 감독이 안되므로 돈을 쓰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방송하였으나 이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김 목사는 1994년 서울연회의 감독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1996년에는 당시 주위사람들의 출마 권유에 따라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돈을 쓰거나 가방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당시 김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에서 총 투표수 1888명 중 1884표를 획득하였는데(약 99.7%의 지지) 이러한 득표는 돈으로 목사나 장로들을 매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감독선거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선거부정에 대한 고소·고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1996년의 제22차 총회의 경우 단 1건의 고소·고발도 제기된 바 없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규정에 의하면 감독 및 감독회장은 2년 임기이고 연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김 목사의 경우 금년 10월로 감독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재출마를 할 수도 없으므로 지난 96년 선거에서 돈을 뿌린 김 목사가 금년 10월의 감독선거에서도 돈을 뿌릴 것이라는 보도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한편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유인물은 그 작성자가 없는 전형적인 흑색선전물인데도 윤 기자는 위 흑색선전물의 작성자와 작성일자, 작성취지, 입수경위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마치 위 선전물의 내용이 진실인 것인 양, 진실로 확인된 것처럼 방영하였습니다.

9.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은 김 목사가 배모 여인과 77년부터 관계를 맺어온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김 목사는 배모 여인을 북악파크호텔에서 만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김 목사는 1975, 6년경 성직자를 유혹하여 한 몫을 챙기려는 배모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였고 그 이후에도 어떠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윤 기자는 배모 여인의 주장이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김 목사가 뻔뻔스럽게도 이를 부인하고 심지어 증인을 조작,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방송하였으나 배모 여인의 주장은

신빙성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배모 여인이 김 목사와의 관계가 언제 처음이었는지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 김 목사와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김 목사는 운전을 할 줄 모르고 또 할 필요도 없는데도 배모 여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는 1980년까지 관계를 가졌다고 했음에도 그녀 명의 유인물에서는 1983년인가 1984년에 김 목사가 자신의 차 안에서 겁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997. 11. 23.의 사건에 대하여도 배모 여인은 금란교회를 찾아간 이유를 수시로 바꾸고 있는 점 볼 때 배모 여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10. 김 목사는 윤 기자에게 배모 여인과의 관계를 시인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부정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였는데 윤 기자는 엉뚱하게도 김 목사의 위와 같은 뜻을 왜곡하여 김 목사가 마치 배모 여인과의 관계를 시인한 것처럼 시청자들을 오도하였습니다.

11. 김 목사는 97년 11월 금란교회 장로들에게 배모 여인과의 관계를 고백한 사실이 없고 또 그 후 금란교회 장로들에게 허위의 내용을 각서에 쓰게 하고 도장을 찍도록 강요한 사실도 없습니다.

12. 김 목사는 97. 12. 11. 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제5차 총회 실행위원회의 사회를 보던 중 오 위원이 괴유인물을 흔들며 배모 여인이 누구냐고 묻길래 배모 여인은 집사람 보고 언니, 언니하며 따라서 사촌동생이나 다름없이 처제처럼 대해준 여잔데 집사람을 괴롭히고 있다고 설명하자 그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므로 식순에 따라 안건토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오 은 이제와서 그 자신이 “사촌동생이나 다름없이 처제처럼 대해준”이라는 말을 ^사촌동생}, ^처제}라고 잘못 들은 사실은 제쳐두고 엉뚱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모 여인의 호적등본을 보고 말고할 필요가 없는데도 윤 기자는 배모 여인의 제적등본을 넘기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오재 발언은 사실이고, 김 목사의 주장은 거짓말임을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13. 배모 여인은 1986년경부터 온갖 거짓말로 김 목사의 부인인 배 를 공갈 협박하여 약 3억5천만원의 돈을 갈취하였고 이를 건디다 못한 배 의 고소로 구속되었는데도 윤정식 기자는 이를 정반대로 해석하여 “김 목사가 3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지난 10년 동안 배모 여인에게 주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김 목사가 피해자인데도 마치 가해자처럼, 반면 배모 여인은 가해자인데도 순교자인 양, 그리고 배 는 위 고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배모 여인은 뛰어난 화술과 불임성이 뛰어난 전형적인 ^꽃뱀사칭} 공갈범임이 분명하고, 또 이런저런 전과도 많으며 성동구치소에서 윤 기자와 인터뷰할 당시에는 공갈죄로 이미 구속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고 있어서 배모 여자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 기자는 배모 여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마치 김 목사가 배모 여인과 불륜관계를 가져오다 배모 여인을 떼내기 위해 김 목사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배모 여인을 공갈혐의로 고소하여 배모 여인을 억울하게 옥살이 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방송한 것입니다.

14. 배모 여인이 1997년 인천에 아파트를 살 때도 7천만원을 김 목사가 지원했다는 윤정식 기자의 멘트도 잘못된 것이며 이 돈은 김 목사의 부인인 배 가 배모 여자로부터 갈취당한 것입니다.

15. 김 목사는 감리교단 내 원로들이 요청한 회의소집을 4차례나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 목사가 배모 여인과의 불륜관계가 폭로되어 곤경에 빠지자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감리회의 교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등 독단적인 행정처리를 하였다는 。2580. 프로그램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6.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은 김 목사가 감독회장 취임한 이후 감리교 본부의 사무국장을 불법해임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김 목사가 감리교 본부 사무국장을 해임한 것은 김 목사가 감리회 감독회장에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임명과정상 불법이 있었다는 관계위원회(장정해석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감독회장 취임 이후 단지 신청인 감리회의 대표자의 입장에서 집행한 것이지, 김

목사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무국장을 보복적으로 인사조치한 것이 아닙니다.

17. 。2580. 프로그램은 김 목사에 관한 사실무근의 개인적인 ^소문}을 다루면서 그 결론부분에서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의 교회음악을 배경으로 하여 김 목사를 포함한 한국기독교인 및 한국기독교계 전체에 대하여 1주일 뒤로 다가온 부활절을 맞아 예수의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 ^다시} 행동과 실천을 통해 부활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한국기독교인 및 한국기독교계 전체가 그 동안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본받지 아니하였고 또 예수의 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 김 목사 등에 대한 종교탄압까지 자행하였고 기독교계 최대 명절인 부활절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방영된 이 사건 프로그램 [길 잃은 목자] 는 단지 김 목사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계 전체, 더 나아가 양식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어 방송이 시청률을 의식하여 무책임한 폭로로 일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8. 그러나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신빙성이 없는 흑색선전물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끝.

□

。

^KBS 일요스페셜} 제작팀이 유적지로 추정되는 제방을

당국의 허가없이 훼손, 유물을 무단 발굴하였다는

사실적 주장을 보도하여 담당 연출자의 명예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11. 19.자 판결 (98카합5492)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998년 11월 19일 한국방송공사 소속 신 PD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문화방송은 ^KBS 일요스페셜} 제작팀이 유적지로 추정되는 제방을 문화재관리당국의 허가도 없이 훼손, 유물을 무단 발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을 보도하여 담당 연출자의 명예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 고 판결했다.

그러나 청구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중 “KBS가 유적지를 불법 훼손한 것처럼 잘못 보도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그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는 법적 평가의 대상으로서 “불법”이라는 것은 단지 보도자측의 의견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다.”며 위 부분의 청구는 기각했다.

문화방송은 1998년 7월 21일 MBC뉴스데스크를 통해 [KBS 유적지불법훼손]의 제하로 KBS 일요스페셜 제작팀이 유적지로 추정되는 지역을 무단으로 발굴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이어 7월 22일에도 KBS의 유적지 훼손사건에 대해 문화재관리당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에 일요스페셜 담당 PD인 신청인은 무단발굴하거나 불법훼손한 사실이 없다며 1998년 8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성립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반론보도를 방송하라는 인용판결을 받았다.

判 決 文

사 건 : 98카합5492 반론보도

청구인 : 신

고양시

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피청구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득렬

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임병렬

변론종결 : 1998. 11. 5.

주 문 : 1. 피청구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방송하는 21:00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과 “KBS 유적지훼손에 관하여”라는 부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청구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내에 <별지 제2> 기재의 반론보도요구문을, 21:00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제목은 24급 고딕활자, 본문은 18급 명조활자 크기의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1회 방송하라. 만일 피청구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에게 위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1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은 한국방송공사(KBS) 소속 프로듀서로서 。KBS 일요스페셜。 프로그램에 방송할 예정이던 “하남시 춘궁동, 5백년 왕도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영상물의 제작을 담당하던

연출자이고, 피청구인은 방송매체를 운영하면서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1998. 7. 21.자 보도내용

피청구인은 1998. 7. 21. 21:00부터 방송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MBC 뉴스테스크。에서 ^KBS 유적지 불법훼손}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피청구인 소속의 앵커우먼 정 은 위 방송의 서두에서 “KBS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유적지로 추정되는 지역을 무단 발굴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였고, 이를 취재한 피청구인 소속의 임 기자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천입니다. 맞은 편 야산의 중간부분이 훤히 맨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무를 거의 뽑아 버린 듯 바로 밑까지 땅을 파헤쳤고 포크레인의 바퀴자국도 보입니다. 서둘러 흙을 다시 덮었지만 땅은 아직 제대로 굳지 않았습니다. KBS 일요스페셜 제작팀이 지난 5일 백제 유적을 찾겠다며 땅 속에서 나온 듯한 기와조각들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불법발굴로 유물들이 그 가치가 확인도 안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KBS측에 취재협조를 한 하남시청은 자신들과 상의없이 발굴을 한 데 대하여 몹시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고 말한 후,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그렇게 임의적으로 발굴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라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의 말을 인용하였고, 이어서 “문화재관리법은 허가없이 발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은 상식 밖의 돌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KBS로부터 경위서를 받는 한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고하였습니다.” 라고 보도하였다. 다만 끝부분에서 “이에 대해 KBS측은 토성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파던 것이라면서 유물이 나와 원상회복시킨 뒤 문화재관리국에 신고했다고 해명하고 오는 26일 방송예정이던 이 작품의 방영시기를 늦추기로 하였다.” 는 내용의 청구인측의 주장도 방송하였다.

다. 1998. 7. 22.자 보도내용

피청구인은 1998. 7. 22. 21:00부터 방송된 위 。MBC 뉴스테스크。에서 ^진상조사 왜 안하나}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피청구인 소속의 앵커맨 이 은 위 방송의 서두에서 “KBS 취재팀이 유적지로 추정되는 제방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 문화재관리당국은 2주가 넘도록 현장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였고, 이를 취재한 피청구인 소속의 조 기자는 “어제 뉴스테스크에서 보도한 하남시 덕풍천 주변의 유적지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문화재관리국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이곳을 허가없이 파헤친 KBS 일요스페셜 제작진에 대한 조사를 경기도 하남시에 미뤄 놓은 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은 KBS 제작진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내 진상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지난 9일자로 보냈을 뿐입니다. 하남시는 어젯밤 KBS 신 PD 이름으로 작성된 경위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의 발굴보존에 관한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정작 사건 발생 2주가 넘도록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물을 찾기 위한 발굴임이 거의 확실한데도 단순히 땅을 파헤친 것으로 덮어 두려는 인상이 짙습니다.” 라고 말한 후, “향토사학자들이 백제시대에 쌓은 제방이라고 하니까 KBS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라는 내용의 문화재관리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였고, 이어서 “방송 제작진은 이 곳이 백제시대 유적지임을 밝히기 위해 땅을 파다고 경위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고학계에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대로 고발조치해야 한다

고 주장합니다.” 라고 보도하였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텔레비전 뉴스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KBS 일요스페셜 제작팀이 백제시대의 유물을 발굴하기 위하여 유적지로 추정되는 제방을 문화재관리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훼손하여 유물을 무단 발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위 영상물의 제작을 담당하던 연출자인 청구인의 명예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반론권 행사로써 주장하는 <별지 제2> 반론보도요구문의 내용 중,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별지 제1>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별지 제2> 반론보도요구문의 기재와 같이, “KBS, 유적지 불법훼손은 사실과 달라!”라는 제목과 그에 따라 “KBS가 유적지를 불법훼손한 것처럼 잘못 보도”하였다는 내용의 방송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그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행위가 위 보도에서 적시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허가없이 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동법 제82조 제2항) 등에 위반한 불법행위인지 여부는 법적 평가의 대상으로서 ^불법}이라는 것은 단지 보도자측의 의견에 불과할 뿐이고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청구인은, 이 사건 보도내용 중에서 “문화재관리국은 상식 밖의 돌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KBS로부터 경위서를 받는 한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고하였습니다.” 라는 위 임 기자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문화재관리국이 하남시에 보낸 공문에는 ^상식 밖의 돌출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은 없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토경위서를 제출토록}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는 내용의 주장도 반론 보도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위 보도의 문맥상 문화재관리국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 중에 청구인측의 행위를 “상식 밖의 돌출행위”로 단정한 후,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위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라고 이해되지는 아니하며, 이 부분 역시 청구인측의 행위를 불법으로 파악하는 피청구인측의 의견이나 평가를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보도내용에는 청구인의 반대주장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보도를 하기 전에 청구인측에게 수 차례에 걸쳐 위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측에서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의 내용 중 청구인의 반대주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우선 위 보도의 전체적 내용과 취지,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도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측의 반대주장이 충분하게 나타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 소을제4호증(통화내역보고서), 소을제5호증의 1(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측이 1998. 7. 21. 위 제1차 보도를 하기 전에 위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KBS측과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청구인과는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KBS 홍보실로부터 위 제1의 나항 말미에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입장표명만을 듣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다만 위 보도에 청구인측의 반박주

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반론보도문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기로 한다).

또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반론보도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그 반대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당원이 인정한 <별지 제1>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다만 위 보도 중에는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땅을 파헤쳤다는 부분과 기와조각 등 유물들이 일부 발굴되었다는 부분 등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있고 이 점은 청구인도 시인하는 바이지만, 그 보도내용의 전취지로 보아 제방훼손의 목적 및 유물의 발굴경위에 관하여 위 보도내용이 진실이고 반박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인정하는 <별지 제1>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당원이 정한 기한 내에 같은 시간대의 같은 프로그램에서 방송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 반론보도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위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1. 19.

재판장 판사 김 대 휘

판사 유 현 중

판사 고 창 후

<별지 제1> 반론보도문

문화방송은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1998년 7월 21일 ^KBS 유적지 불법훼손} 그 다음날 ^진상조사 왜 안하나}라는 제목으로, KBS 일요스페셜 제작팀이 백제시대의 유물을 발굴하기 위하여 문화재관리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유적지로 추정되는 지역을 불법훼손하여 유물을 무단 발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KBS 일요스페셜 제작팀의 신 PD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먼저 KBS측은 문제된 하남시 덕풍천 주변지역에 관하여, 그 지역은 일부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유적지로 추정되고 있을 뿐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으로서 유적지로 지정된 사실도 없고, 이미 하남시의 도로개설로 훼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주택과 카페들까지 들어서 있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 KBS측은 백제시대 유물을 발견한 경

위에 관하여 그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취재하던 과정에서 단지 지층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흙층의 두께를 알아보려고 절토하고 나서 삼으로 진흙층을 파보던 중에 우연히 석렬 등 유물을 발견하게 되어 절토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보존한 후 즉시 문화재관리국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방송의 ^KBS 유적지훼손)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KBS측 신 PD의 반론내용을 방송해 드린 것입니다. 끝.

※ 1. 본 반론보도문의 문장을 방송에 적합하게 변경시킬 수는 있으나, 그 취지를 곡해하거나 내용이나 길이를 줄여서는 아니된다.

2. 본 방송의 배경화면은 없어도 되지만 주문에 표시된 제목과 부제목은 뚜렷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위 뉴스에서 방송된 화면 중에서 보도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정지화면이나 동작화면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며, 단 화면없이 자막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반론내용의 요지를 나타낼 것이고, 원방송내용의 요지와 대비하는 경우에는 반론내용이 더 큰 활자로 처리되어야 한다.

<별지 제2> 반론보도요구문

제목 : ^KBS 유적지 불법훼손)은 사실과 달라!

내용 : (주)문화방송은 지난 7월 21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KBS 유적지 불법훼손)이라는 제목으로 “KBS 일요스페셜 제작팀이 유적지로 추정되는 지역을 포크레인을 동원해 함부로 땅을 파헤쳐 유물을 불법발굴하였고, 그 유물들이 가치확인도 안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상 허가없이 발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문화재관리당국은 상식 밖의 돌출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KBS로부터 경위서를 받는 한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고하였다.” 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하였고, 이어 7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진상조사 왜 안하나}라는 제목으로 “KBS 취재팀이 유적지로 추정되는 제방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 문화재관리당국은 2주가 넘도록 현장확인조차 않고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으나, 유물을 찾기 위한 발굴임이 거의 확실한데도 단순히 땅을 파헤친 것으로 덮어 두려는 인상이 짙고, 고고학계에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대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보도대상지역은 지금까지 유적지로 지정된 사실도 없고, 일반사학자들이 유적지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은 곳으로서 이미 하남시의 개발로 인한 도로개설로 훼손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택과 카페들까지 들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KBS가 유적지를 불법훼손한 것처럼 잘못 보도한 것이며, KBS 일요스페셜 제작팀은 이미 도로개설로 훼손되어 있는 지역에서 단순히 지층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흙층의 두께}를 알아보려고 절토하던 중 우연히 석렬 등 유물을 발견하게 되어 절토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보존한 후 즉시 문화재관리국에 신고하였고, 석렬 등 유물을 발견하게 된 경위도 포크레인으로 절토작업을 하던 중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삼으로 진흙층을 파내던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고, 또한 문화재관리국이 하남시에 보낸 공문에는 ^상식 밖의 돌출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은 없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절토경위서를 제출하도록}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지역은 그동안

일부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유적지로 추정되고만 있을 뿐, 기존 고고학계로부터는 별다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못한 지역이었으나, KBS 일요스페셜 제작팀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취재하던 중 불가피하게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었음을 밝힙니다.

반론보도청구인 KBS 일요스페셜 프로듀서 . 끝.□

충청리뷰에 게재된 신청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의
공표로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청주지방법원 1998. 12. 29.자 판결 (98카기571)

事實概要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1998년 12월 29일 김○○ 씨가 주식회사 충청리뷰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 “신청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의 공표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충청리뷰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주간지인 <충청리뷰>는 1998년 5월 2일자를 통해 청주시 강서동 ○○연립주택이 10년째 소유권 분쟁에 둘러싸여 있으며, 현재 명의인인 신청인이 ○○연립 소유권을 얻는 과정에서 도장을 도용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여(98충북중재6) 중재결과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중재결정이 내려졌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하자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8카기571 반론보도청구

신청인 : 김○○

피신청인 : 주식회사 충청리뷰사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76의 1

대표이사 윤석위

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변론종결 : 1998. 12. 8.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충청리뷰> 경제면 중 첫 번째 면의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연립 소유권 분쟁 보도 관련 반론문] 이라는 제목은 2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나머지 내용은 10.8포인트 신문명

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게재하라.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충청리뷰>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주간 <충청리뷰>에 <별지 2> 반론보도문을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충청리뷰> 제10면(경제 1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1998. 5. 2.자 <충청리뷰> 제11면 상자기사 제목 [원고가 피고측 변호사 선임했다])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3단에 걸쳐 게재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하여야 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채무의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피고가 발행하는 주간지인 <충청리뷰> 1998. 5. 2.자(제31호) 제1면의 왼쪽 부분에 대체목 [열쇠의 주인은 누구인가] , 중간제목 [의문의 소유권] 이라는 제목을 달고, 제10면 상단 부분에 대체목 [^○○연립} 주인이 바뀌었다?] , 중간제목 [문서위조·증언 불일치·법정 기망 의혹에 소유권 주장 제각각] , 제11면 상자기사에 대체목 [원고가 피고측 변호사 선임했다] , 중간제목 [경매 과정서 이중플레이 의혹 제기·채권자 도장 도용 허위 합의서 작성] 이라는 제목을 단 후, 제10 내지 12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청주시 강서동 ○○-○○ ^○○연립주택}이 10년째 소유권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에 끝간 데 없는 송사가 이어지면서 골치덩이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연립주택 토지와 건물 20세대는 현재 김경숙 씨(가명·60·여)의 명의로 등기가 이진됐고, 신축 당시 동업자로 참여했던 임○○ 씨(44)는 나머지 건물 4세대를 소유하고 있다(제10면 본문 좌측 첫번째단 1행 내지 12행).

나. 지난 10여 년 동안 김경숙 씨가 ○○연립 소유권을 얻기 위해 펼친 일련의 법적 행동에는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의문점들이 있다.

우선 지난 92년 4월 18일 김경숙 씨가 김오원 씨(가명·58)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내 승소하는 과정에서 상식 밖의 방법이 동원됐다는 점이다(제11면 상자기사 좌측 첫번째단 1행 내지 8행).

다. 한편 김경숙 씨는 지난 89년 당시 ○○연립 토지대금과 관련해 50만원의 경매신청비용을 자신이 대신 내주면서 원소유주 민중석 씨(가명·사망)가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변○○ 씨(56) 등 관련자들은 김오원 씨의 이름으로 2,08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민씨에게 150만원은 추가로 보상하는 조건으로 경매취하를 합의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민씨의 경매를 중용했던 김경숙 씨는 오히려 민씨를 상대로 건축비 청구등과 관련해 공탁금을 가압류를 신청했는가 하면 나중에 이를 취하하면서 김오원 씨의 개인채권자 3명에게 공탁 사실을 알려 공탁금을 찾아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위 상자기사 좌측 세 번째단 7행 내지 21행 및 네 번째단 1행 내지 5행).

라. 그런가 하면 김경숙 씨는 지난 93년 ○○연립 채권자들이 김경숙 씨를 상대로 낸 소유

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승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5년 11월에 김씨는 채권단장 이모 씨, 문모 씨 등과 함께 ○○연립의 소유권자가 김씨 자신이라는 내용의 합의서와 이에 따른 취하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면서 나머지 채권자 4명의 동의없이 허위로 도장을 날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채권자들의 도장을 가지고 있던 채권단장 이모 씨에게 김씨는 지분보다 1세대를 더 주기로 하고 이 같은 허위문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위 상자기사 좌측 네 번째단 8행 내지 26행).

마. 또한 김씨는 이에 앞서 90년 1월 31일 김오원 씨의 채권단에게 20억원으로 평가된 남편 L씨 소유의 서울 부동산을 채무지급 이행의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단의 채권일체를 위임받았다. 실제로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위임받은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아 94년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었다.

그러나 김씨는 94년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직후 채권자 중 4명에게만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는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제12면 본문 좌측 첫 번째단 19행 내지 26행 및 두 번째단 1행 내지 9행).

2.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가. 위와 같이 피신청인 발행의 <충청리뷰>에 게재된 보도내용 중 신청인과 관련된 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부분은 그 주장내용이 공표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해를 받은 범위 내에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게재한 위 기사의 내용이 모두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할 뿐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된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 행사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음에서 인정하는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론보도의 내용과 크기 및 게재방법

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신청인의 기사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관한 부분과 이로 인해 침해된 신청인의 법익, 그리고 위 보도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적 사실의 진술을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반론보도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 중 위 인정 반론보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나머지 부분은 피신청인의 가치평가 내지는 의견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기사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반론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위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은 신청인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충청리뷰> 경제면 중 가장 첫 번째 면의 우측 상단 부분에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되 [○○연립 소유권 분쟁 보도 관련 반론문] 이라는 제목은 위 기사 중 제 11면 상자기사의 [원고가 피고측 변호사 선임했다] 라는 제목과 같은 크기인 2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나머지 내용은 위 상자기사와 같은 크기인 10.8포인트 신문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게재하게 하는 것이 원보도문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 반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인정된다.

4. 간접강제

한편 피신청인이 이 판결 확정일 후 최초로 발행하는 <충청리뷰>에 위 반론보도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발행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29.

재판장 판사 김 용 덕

판사 강 경 구

판사 신 상 렬

<별지 1> ○○연립 소유권 분쟁 보도 관련 반론문

1998. 5. 2.자 <충청리뷰>(제31호) 제1면의 [열쇠의 주인은 누구인가], 제10면의 [^○○연립} 주인이 바뀌었다?] 라는 제목 아래, 제10면부터 제12면에 걸쳐 청주시 강서동 소재 ^○○연립주택}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면서, 건물·토지 경매와 관련하여 변○○ 씨(56) 등 관련자들이 김오원 씨(가명·58)의 이름으로 공탁한 사실을 김경숙 씨(가명·60·여)가 김오원 씨의 개인 채권자 3명에게 알려 공탁금을 찾아가게 했고, 95년 11월 ○○연립 채권단장 이모 씨, 문모 씨 등과 함께 ○○연립의 소유권자가 김씨 자신이라는 내용의 합의서와 이에 따른 취하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면서 나머지 채권자 4명의 동의없이 허위로 도장을 날인했으며, 이 같은 허위문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채권자들의 도장을 가지고 있던 채권단장이모 씨에게는 지분보다 1세대를 더 주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90년 1월 31일 김오원 씨의 채권단에게 부동산을 채무지급이행의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단의 채권일체를 위임받은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아 94년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판결 직후 채권자 중 4명에게만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는 갚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김경숙 씨는 김오원 씨가 공탁한 사실을 김오원 씨의 채권자들에게 알린 사실이 없고, ○○연립 채권단의 도장을 도용해 허위의 합의서, 취하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거나 채권단장 이모 씨에게 지분보다 1세대를 더 주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김오원 씨의 채권자들 중 5명(1명 포기)에게만 자신의 부동산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을 위임받았기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였다.

반론인 김○○. 끝.

<별지 2>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문

<충청리뷰>는 1998. 5. 2.자(제31호) [의문의 소유권, 열쇠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표지 제목과 10~12면에 걸친 [^○○연립} 주인이 바뀌었다?] 라는 제목의 청주시 강서구 ○○-

○○ ^○○연립주택}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분쟁 관련 기사를 통해, “김경숙 씨(가명·60·여)가 지난 92년 4월 18일 김○○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내 승소하는 과정에서 상식 밖의 방법이 동원됐고”, “○○연립 토지대금과 관련한 경매과정에서 이중플레이를 했으며”, “건물토지경매와 관련해 변씨 등 관련자들이 김○○ 씨의 이름으로 공탁한 사실을 김○○ 씨의 개인 채권자 3명에게 알려 공탁금을 찾아가게 했다.” 또한, “김씨는 95년 11월 ○○연립 채권단장 이모 씨, 문모 씨 등과 함께 ○○연립의 소유권자가 김씨 자신이라는 내용의 합의서와 이에 따른 취하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면서 나머지 채권자 4명의 동의없이 허위로 도장을 날인했으며, 이 같은 허위문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채권자들의 도장을 가지고 있던 채권단장 이모 씨에게는 지분보다 1세대를 더 주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김○○은 90년 1월 31일 김○○ 씨의 채권단에게 부동산을 채무지급이행의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단의 채권일체를 위임받은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아 94년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판결 직후 채권자 중 4명에게만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는 갚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김○○ 씨는 92년 4월 18일 김○○ 씨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과정은 실체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볼 때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위 토지대금과 관련한 경매신청 과정은 당시 민○○과 합의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민○○이 배신함에 따라서 이를 대처한 것이다. 그리고 김○○ 씨가 공탁한 사실을 김○○의 채권자들에게 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 씨는 ○○권단의 도장을 도용해 허위의 합의서, 취하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거나 채권단장 이모 씨에게 지분보다 1세대를 더 주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김○○ 씨의 채권자들 중 5명(1명 포기)에게만 자신의 부동산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을 위임받았고 이에 채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언론이 개입한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론보도신청인 김○○. 끝.□